

2017R2A1A1013739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제 단일화 연구  
(A Study on Comprehensive  
Legislation of Fundamental Research)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2017. 9. 26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안 내 문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제 출 문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 하

본 보고서를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제 단일화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 9 . 26 .

연구기관명 :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요 약 문 .....	15
1. 서 론 .....	21
1.1. 연구의 목적 .....	21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22
1.2.1. 연구의 대상 .....	22
1.2.2. 연구의 범위 .....	23
2. 기초·원천 관련 기초분석 .....	25
2.1. 개 관 .....	25
2.2. 기초·원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	28
2.2.1. 문제점 .....	28
2.2.2. 기초·원천연구분야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	31
2.3. 기초·원천기술 관련 현행법의 현황과 입법 과제 .....	32
2.3.1. 「과학기술기본법」의 현황과 문제점 .....	32
2.3.2. 그 밖에 원천·기초기술 관련 통합 대상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	38
3. 외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현황과 문제점 .....	47

3.1. 개 관 .....	47
3.2. 미 국 .....	47
3.2.1. 개 요 .....	47
3.2.2. 미국 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	48
3.2.3. 국가과학기술정책, 조직, 우선순위법(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Act of 1976) ...	68
3.2.4.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1980) .....	69
3.2.5. 특허 및 상표법 수정법(Bayh-Dole Act, Patent and Trademark Law Amendments Act, 1980) .....	70
3.2.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	70
3.2.7. 시사점 .....	72
3.3 EU와 유럽 주요국 .....	74
3.3.1. 개 요 .....	74
3.3.2. E U .....	74
3.3.3. 영 국 .....	77
3.3.4. 독 일 .....	79
3.3.5. 프 랑 스 .....	80
3.4 일 본 .....	83
3.4.1.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법률 체계 .....	83

3.4.2.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제도 체계 .....	87
4. 현행법의 체계와 정비 방향 .....	97
4.1. 개 관 .....	97
4.2.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의 제정방안 .....	128
4.2.1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의 입법목적 .....	128
4.2.2. 중요용어의 정의 .....	131
4.2.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39
4.2.4. 국가 등의 책무 .....	141
4.2.5.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145
4.2.6.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153
4.2.7.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	155
4.2.8. 기초연구 등 사업의 추진 .....	159
4.2.9.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	162
4.2.10. 기본육성분야 정책심의회 설치 .....	165
4.2.11. 기본육성분야 전문연구소의 설립 및 지정 .....	172
4.2.12. 기초연구 등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	176
4.2.13.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178
4.2.14.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	182
4.2.15.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	185
4.2.16. 기본육성분야에 관한 관계부처간 업무분담 .....	188
4.2.17. 투자의 확대 .....	194

4.2.18. 대학의 기초연구 등 환경 조성 .....	196
4.2.19. 전문인력의 양성 .....	198
4.2.20. 연구시설의 확충 .....	201
4.2.21. 연구 시설 장비 공동활용 촉진 .....	203
4.2.22. 민간 등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조사 등 .....	204
4.2.23. 학술단체활동지원 .....	207
4.2.24. 공동연구 지원 .....	208
4.2.25. 공공기관 등 연구비 지원 .....	210
4.2.26. 국제협력 .....	211
4.2.27. 기술정보체계 구축 .....	214
4.2.28. 표준화 및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	216
4.2.29. 기술영향평가 .....	218
4.2.30. 연구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	219
4.2.31. 생명연구자원 등에 관한 통계간행물 등의 발간 .....	220
4.2.32. 조세감면 등 .....	223
4.2.3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및 실용화 .....	225
4.2.34. 산업화 및 창업 등 지원 .....	227
4.2.35. 기본육성분야 기술연구단지의 조성 .....	229
4.2.36. 임상 및 검정 .....	231
4.2.37. 산업화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등 .....	232
4.2.38.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	234

4.2.39. 청 문 .....	235
4.2.40. 권한의 위탁 .....	237
4.2.41. 감독명령 등 .....	238
4.2.42. 비밀유지의무 .....	239
4.2.4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40
4.2.44. 과태료 .....	241
4.2.45. 시행일 .....	242
4.2.46. 다른 법률의 폐지 .....	243
4.2.47.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법령에 대한 적용 .....	244
4.3.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	244
4.3.1. 목 적 .....	244
4.3.2. 정 의 .....	246
4.3.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55
4.3.4. 종합계획의 수립 등 .....	256
4.3.5.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262
4.3.6.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	264
4.3.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	266
4.3.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	269
4.3.9.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	270
4.3.10. 기술개발지원 .....	271
4.3.11. 사후관리 .....	274

4.3.12.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	276
4.3.13. 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	277
4.3.14. 기술개발사업 .....	279
4.3.15.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284
4.3.16.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288
4.3.17.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	290
4.3.18.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292
4.3.19. 신제품의 인증 .....	294
4.3.20.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295
4.3.21. 인증표시 .....	296
4.3.22. 인증의 사후관리 .....	298
4.3.23. 인증의 취소 .....	298
4.3.24. 기술기반조성사업 .....	300
4.3.25. 기술인력의 양성 .....	302
4.3.26. 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304
4.3.27. 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305
4.3.28.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306
4.3.29. 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	308
4.3.30.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	309
4.3.31. 기술의 표준화 .....	311
4.3.32.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	312

4.3.33. 기술저변의 확충 .....	313
4.3.34. 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	315
4.3.35. 국제기술협력사업 .....	316
4.3.36. 남북한 기술협력의 촉진 .....	317
4.3.37.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	318
4.3.38.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320
4.3.39.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	321
4.3.40.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 .....	322
4.3.41.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	324
4.3.42.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	325
4.3.4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326
4.3.44.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327
4.3.45.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	329
4.3.46.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	330
4.3.47. 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	331
4.3.48. 한국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336
4.3.49.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	339
4.3.50.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	341
4.3.51. 한국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	343
4.3.52.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344
4.3.53. 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	348

4.3.54.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349
4.3.55. 실태조사	352
4.3.56.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353
4.3.5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356
4.3.58. 사업화 전문회사	357
4.3.59.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358
4.3.60.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360
4.3.61.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61
4.3.62.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363
4.3.6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365
4.3.64.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366
4.3.65. 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369
4.3.66.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371
4.3.67. 기술보호·육성사업의 실시	373
4.3.68.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374
4.3.69.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376
4.3.70.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377
4.3.71. 기술등의 기부채납	378
4.3.7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379
4.3.73. 출자회사의 설립 등	381
4.3.74.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383

4.3.75.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	384
4.3.76.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	385
4.3.77.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	387
4.3.78.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	388
4.3.79.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	389
4.3.80.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	393
4.3.81.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	394
4.3.82.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	394
4.3.83.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	396
4.3.84. 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	397
4.3.85. 국유재산의 대부 등 .....	398
4.3.86.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	400
4.3.87. 기술평가의 활성화 .....	401
4.3.88.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402
4.3.89.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404
4.3.90. 신탁사무의 방법 .....	408
4.3.91. 신탁사무의 위탁 .....	409
4.3.92.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	411
4.3.93. 감 독 .....	412
4.3.94. 허가취소 등 .....	413
4.3.95. 과징금처분 .....	415

4.3.96.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417
4.3.97. 특별과정의 설치·운영	419
4.3.98.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420
4.3.99.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422
4.3.100. 보고·검사 등	424
4.3.101. 산업자문 등	425
4.3.102.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426
4.3.103. 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427
4.3.104. 기술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428
4.3.105. 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429
4.3.106. 신기기 등의 공급	430
4.3.107. 기술교육센터 설치 등	431
4.3.108. 실험·실습시설 설치비 등의 부담	433
4.3.109.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435
4.3.110.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436
4.3.111. 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438
4.3.112. 장학금의 지급	438
4.3.113. 산학협력계약	439
4.3.114.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441
4.3.115. 학교기업	443
4.3.116. 협력연구소	445

4.3.117. 인력의 공동활용 .....	446
4.3.118. 파 견 .....	448
4.3.119.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	449
4.3.120.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	450
4.3.121.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451
4.3.122. 학자금 용자계약의 지원 .....	452
4.3.123. 수수료 .....	453
4.3.124. 권한의 위임·위탁 .....	455
4.3.125.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458
4.3.126. 비밀유지 .....	460
4.3.127. 별 칙 .....	461
4.3.128. 별 칙 .....	463
4.3.129. 양벌규정 .....	464
4.3.130. 과태료 .....	466
4.3.131. 부 칙 .....	467
5. 결 론 .....	469
【부록 1】 (가칭)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안 .....	473
【부록 2】 (가칭)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497
참고문헌 .....	569

## 요 약 문

###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초·원천연구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막대한 정부예산의 집중 투자와 추진체계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원천연구는 연구비 투입과 비교하여 그 성과가 낮아 연구사업 추진과 연구관리 체계화의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도 융·복합 및 협동연구가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마다 소관 법률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원천연구의 유연성 및 융·복합연구를 저해하고 있음
  - 각 부처의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사업추진 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지원기관 및 지원방식 등을 체계화하여 효율성 증대 필요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기초·원천연구의 유연성을 높이고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해외의 사례와 시사점

### □ 미국

- 미국은 2007년 부시대통령이 제정한 “기술, 교육, 과학을 의미 있게 증진하는 기회를 창출하는 법률(약칭 미국경쟁력강화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지원 및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여 국가경쟁력 증진
  - 이 법에 따라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도 예산 재배정을 승인하여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기초·원천연구에 관련한 연방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계획)의 기초하여 유일하게 예산을 분배하고 조정함
- 그밖에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결과물의 확산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하고, 「특허 및 상표법 수정법」에 따라 연방자금이 투입된 특허 등에 대한 소유권을 체계화하여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상업화를 증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의 과학기술정책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유연하게 기초·원천 연구를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있으며, 기초·원천연구 결과

물의 혁신 및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단일법제를 마련하여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음

## □ 일본

- 일본은 기초·원천연구 관련 총리가 직접 의장이 되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세우고 법제도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동원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구조이고, 총리가 직접 관여하기에 계획의 위상과 집행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음
- 일본의 경우 기초·원천연구의 지원은 분산된 개별법률이 아니라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종합계획)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 총리가 중심으로 되는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음

## 3. 기초·원천연구 관련 통합법의 제정방안 및 주요 내용

###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 분석 및 정비 방향
  -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입법사항은 유지하되, 기초·원천연구 관련 통합법의 제정방안에서 중복성 또는 중첩성이 있는 조항(예컨대, 참여제한, 사용료 징수 등)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
  -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입법사항의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원천연구에 관련한 법률을 통폐합

○ 기초·원천연구 관련 현행법의 분석 및 통폐합 방향

－ 기초·원천연구 관련한 개별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원천연구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교육부의 법령만을 통합대상으로 정비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등과 같이 중소기업에 관련된 기초·원천연구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 기초·원천연구 관련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의 법령 중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통폐합을 검토하여 「(가칭)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안)」과 「(가칭)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원화하여 정비하고 관련 소관 부처도 개선

## □ 「(가칭)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의 제정방안

- 통합대상 법률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으로 한정함
- ※ 그 밖의 여러 부처의 소관 법률에서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이더라도 각 부처 소관 사항과 밀접한 분야는 각 부처에서 별도의 법률을 가지는 것이 적합하여 통합 대상에 제외
- 새로운 통합법안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현행 통합대상 법률이 상호 유사한 내용이 혼재하고 있어서 체계정합성을 저해하거나 중복성 등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단순화하거나 통일적인 조항으로 통폐합함
  - 다만, 정부 부처가 소관 과학기술 관련 법률 차원에서 특유한 진흥시책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지원 방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법안에서도 관련 조항을 둬
- 새로운 통합법안에서는 연구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사업화 등 전주기로 확대되는 R&D 역할의 변화에 따라 분야별 법제를 포괄함과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도 병행

□ 「(가칭)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

- 기초·원천 연구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그 성과물인 기술의 개발, 사업화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부정책의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 지원, 기술혁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그리고 기술교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관련 법제도를 정비
- 기술개발지원, 기술혁신촉진, 기술이전, 산학협력 등은 3개 부처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서 정책의 통일성과 지원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통합
- 새로운 통합법안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통합대상 법률이 상호 유사한 내용이 혼재하고 있어서 체계정합성을 저해하거나 중복성 등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단순화하거나 통일적인 조항으로 통폐합함
  - 구체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술개발지원’과 「산업기술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하는 방안 마련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기초·원천연구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막대한 정부예산의 집중 투자와 추진체계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원천연구는 연구비 투입과 비교하여 그 성과가 낮고 연구사업 추진의 비효율성과 연구관리의 체계화가 미흡하여 연구개발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도 융·복합 및 협동연구가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마다 소관 법률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원천연구의 유연성 및 융·복합 연구 등을 저해하고 있음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기초·원천연구의 유연성을 높이고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제도 정비 필요
  - 각 부처의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사업추진 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지원기관 및 지원방식 등도 체계화하여 효율성 증대 필요

##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1.2.1. 연구의 대상

-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간의 체계성, 연계성
  - 기본법은 추상적 입법방향과 지침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여야 하지만 기본법에도 상당히 구체성을 가진 조항들이 있어 개별법상의 규정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간의 체계성, 연계성 검토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들은 모두 진흥법 내지 육성법 등 조장법규에 해당하며 조장법규의 내용을 이루는 조장수단에 있어 특별한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음
  - 나노연구, 생명공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터 분야, 뇌연구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진흥 및 지원시책에 차등을 둔 경우 및 누락되거나 과잉 규정된 사항 추출
  - 생명공학과 생명연구자원 및 뇌연구 등에서 상호 중첩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을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른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검토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과 연구기관 육성 및 인재육성 관련 법률간의 체계성, 연계성
  -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된 연구담당기관의 유형 및 기능에 관한 입체적 분석

- 연구담당기관을 다변화하는 방안의 장단점 분석 등

□ 기초·원천연구 관련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총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법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방안 제시
- 법제처 법률 통폐합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의하여 개정안 제시
- 각종 연구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기능 등에 관한 조정 필요성 검토

1.2.2. 연구의 범위

-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 과학기술과 관련 기초·원천연구 법령을 분석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법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 미국과 일본의 입법 현황과 정부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의 추진 및 지원 현황을 살펴봄
-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현행법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을 고찰하고 각 조항별로 개선대상을 중심으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먼저, 기초·원천연구의 진흥 및 지원에 관련한 현행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 다음으로, 기술과 관련된 지원 및 사업화 등에 관련한 현행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 2. 기초·원천 관련 기초분석

### 2.1. 개 관

#### □ 국가정책과 법제의 관계

- 국가의 정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정책은 법령으로 표현하는 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됨
- 국가정책결정구조를 시스템화하기 위하여서도 해당 구조나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
-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은 원래 법령과 별개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조달되지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산편성의무가 발생하므로 안정적 예산 조달을 위하여서도 법제화가 필요

#### □ 입법단위

- 어떤 사항을 법령에 담을 경우 하나의 법령에 체계적으로 담는 것이 효율적임(조문이 많을 경우 조와 항 외에 편 장 절 등으로 편성)
- 그러나 입법추진주체가 다름에 따라(정부입법과 의원입법/여러 부처에서 자기 소관에 따라 입법하는 경우/같은 부처내의 여러 국이나 과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등) 독립된 다수의 법령에 산재되어 규정되는 경우도 많음

- 하나의 법령에 조문이 너무 많을 경우 찾아보는데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개의 법률로 나누는 경우도 있음
- 입법전수를 업무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분법을 통해 업무실적을 늘리려는 동기에서 분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음
- 관련되는 사항을 여러 법령에 나누어 규정할 경우 법령 상호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관련사항을 일괄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됨
- 비교적 최근에 들어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분법의 통제 및 유사 법제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법제처 법률 통폐합 및 분법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물 제시)

□ 과거 다수 법제 일괄 통폐합 주요사례

- 각 산업별 육성 진흥법을 통합하여 공업발전법 제정
  - 시행 1986.7.1. / 법률 제3806호 / 1986.1.8. 제정
  -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철강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통합
- 각종 공중위생영업 규제법을 통합하여 공중위생법 제정
  - 시행 1986.11.11. / 법률 제3822호 / 1986.5.10. 제정
  -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 유기장업법 통

합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법을 통합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 1999.1.29. / 법률 제5733호 / 1999.1.29. 제정

－ 한국개발연구원법, 한국조세연구원법,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민족통일연구원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한국행정연구원법,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산업연구원법, 에너지경제연구원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한국노동연구원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한국법제연구원법, 한국여성개발원법, 산업기술정보원법, 한국한의학연구원법,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통합

※ 그 후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04.10.24. / 법률 제 7219호 / 2004.9.23. 제정)을 제정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을 관장하도록 함

○ 각종 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 시행 1994.3.16. / 법률 제4739호 / 1994.3.16. 제정

－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

### 단체의장선거법 통합

- 각종 간접세법을 통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정
  - 시행 1977.7.1. / 법률 제2934호 / 1976.12.22. 제정
  -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통합
- ※ 부가가치세법과 함께 특별소비세법(시행 1977.7.1. / 법률 제2935호 / 1976.12.22. 제정)도 제정하여 내용 분산 규정

## 2.2. 기초·원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 2.2.1. 문제점

####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간의 체계성·연계성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들은 모두 진흥법 내지 육성법 등 조장법규에 해당하며 조장법규의 내용을 이루는 조장수단에 있어 특별한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음
- 일부 법률에서는 규제적인 사항을 내포하고 있지만 규제사항 역시 조장수단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가 있음
- 규제조항의 경우 그 필요성과 과잉규제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실시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두고 있는데 각 개별법률이 일반법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할 뿐 그에 대하여 어느 법률이 특별법인지가 애매
- 공통적인 사항을 각 개별법률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면서 특별

한 이유 없이 차이를 둔 경우는 없는지 검토

- 나노연구, 생명공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터 분야, 뇌연구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진흥 및 지원시책에 차등을 둔 경우 및 누락되거나 과잉 규정된 사항 추출
  - 생명공학과 생명연구자원 및 뇌연구 등에서 상호 중첩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을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른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검토
-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간의 체계성·연계성
- 기본법은 추상적 입법방향과 지침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여야 하지만 기본법에도 상당히 구체성을 가진 조항들이 있어 개별법상의 규정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 기본법의 지위가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보듯이 일반법이 아닌 일종의 상위법의 개념으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개별법에서 기본법과 달리 정한 사항이 있다면 개별법을 정비함이 타당하지만 상충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고 개별법을 검토하도록 함
  -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기본법과 비교하여 별다른 구체성이 없고 기초 원천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별법의 내용을 기본법에서 일괄규정하는 것이

체계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유리함

□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과 연구기관 육성 및 인재육성 관련 법률간의 체계성·연계성

-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된 연구담당기관의 유형 및 기능에 관한 입체적 분석 : 다양한 형태의 연구담당기관을 규정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각종 담당기관을 다른 법률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검토 등
- 연구담당기관을 다변화하는 방안의 장단점 분석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효율적 조정과 민간 연구기관의 최대 활용 및 활성화 수단을 모색하여 통척화하는 방안
-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일반 조항과 개별법에 규정된 조항간의 관계 분석 : 기본법의 규정만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기본법의 규정만으로 대처할 경우에도 기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개별법률에 규정할 경우 각 분야별 공통사항임을 감안하여 통척에서 일괄규정하는 방안 모색

□ 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 간의 상관관계

- 예산배분에 관한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일반원칙과 개별법상 예산관련 조항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상충여부 확인

- 기초·원천연구 분야 내에서 예산의 통합관리의 가능성 및 장단점 분석과 통합관리 근거규정을 둘 경우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추출

### 2.2.2. 기초·원천연구분야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 단일법의 제정; (가칭)기초연구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가칭)기술지원 및 기술혁신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제시
  - 총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법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방안 제시
  - 법제처 법률 통폐합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의하여 개정안 제시
  - 각종 연구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기능 등에 관한 조정 필요성 검토
- 단일법 제정의 기초가 될 개별법률 선정
  - 장 절 구분이 잘 되어 있고 내용이 풍부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여 통합하는 방안 모색
- 단일법 내용 구성 및 장절 편성 원칙
  - 공통조항 가운데 「과학기술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기본법만으로 충분한 조항은 삭제, 기본법만으로 대처하되 기본법을 보완하

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 공통조항 가운데 존치 필요조항은 통칙, 보칙 및 별칙 장에서 통일적으로 규정
  - (예시) 기본계획의 수립은 공통사항이지만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할지 통합하더라도 항목별로 나누어 수립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각각 수립하게 할지를 검토
  - 각 개별법률 특유의 사항으로서 존치 필요사항은 장별로 나누어 규정

□ 개별법에 대한 단일법안과 기본법 정비안을 제시

- 각 법안은 조문별로 입법취지, 외국 입법사례, 종전의 규정과의 비교, 유사 국내입법례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입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국회심의 등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함

## 2.3. 기초·원천기술 관련 현행법의 현황과 입법 과제

### 2.3.1. 「과학기술기본법」의 현황과 문제점

#### 2.3.1.1. 기초·원천기술 관련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

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①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②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③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
  - ④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 ⑤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의2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을 규정하여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실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음)

- 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 ②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 위의 ①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

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의3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의4에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①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함

□ 기초연구의 진흥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5조에서 기초연구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6조의3에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 ②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단체와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 ③ 전문인력의 양성
    -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협력
    - ⑤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⑥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들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산학연협력 촉진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6조의8에서 산학연협력 촉진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2.3.1.2. 기초·원천기술 관련 「과학기술기본법」의 문제점

□ 「과학기술기본법」의 근거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하위 법령의 마련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 제11조의3, 제15조, 제16조의3, 제16조의8에서 포괄적인 근거규정 등을 둠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 제11조, 제15조, 제16조의3, 제16조의8은 기초 및 원천연구와 관련 세부적인 입법사항으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

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성이 있는 경우 정비가 필요

-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는 기초 및 원천연구와 관련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아 정비가 필요할 수 있음

### 2.3.2. 그 밖에 원천·기초기술 관련 통합 대상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변화

○ 1989.12.30. 기초과학연구진흥법으로 제정됨

-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 선진국을 지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①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를 거쳐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② 정부는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기초과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및 대학교수등에게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함

- ③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초과학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등 제반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④ 기초과학연구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정보등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⑤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기금을 확대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⑥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당해 정부투자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함
  - ⑦ 기업 또는 개인이 대학부설연구소설립지원·대학연구시설지원·대학연구장학금지원등을 위하여 출연할 경우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2011.3.9. 전부개정을 통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

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 ②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 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③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제정과 주요 변화

- 1994.12.22.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출발
  -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기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기술인력 양성, 정보유통 촉진, 연구시설 확충등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① 이 법은 상공자원부소관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부문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조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함.
  -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이 경우 종합과학기술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정보등의 수집·분석·유통의 촉진, 기술연구시설 등의 확충,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신기술보육사업,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기술진단·지도등과 같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사업의 추진주체와 정부출연지원근거를 마련함.
  - ④ 산업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정보전산망의 구성·이용과 산업정보전산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산업정보의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⑤ 상공자원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의 기술지원자금의 확대와 그 효율적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⑥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원을 설립함.
  - ⑦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근거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이 법을 폐지함.
- 1999.1.29. 일부개정으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으로 변화

- 이 법은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기술”은 공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등에 관한 산업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 이 법에서 “기술기반조성”은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정보·연구시설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말함

○ 2006.4.28. 전부개정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변화

-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변화

○ 1989.12.30.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됨

-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기술이전·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000.1.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 연구개발성과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연구기관별로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기술평가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기술평가체제를 확립하고, 기술유통화 촉진사업의 실시 등 기술평가와 연계된 기술금융을 활성화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변화

○ 1963.9.19. 제정

-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기술계 인적자원의 양적확보와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자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인을 양성하려는 것임.
- ① 국가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교육의 진흥을 권장하도록 함.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한 학교의 실험 실습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그 배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의 진흥에 알맞도록 특별히 고려하도록 함.
- ③ 산업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자격 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④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설치함.
- ⑤ 국가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장차 종사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단기의 산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함.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의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⑦ 국가는 산업교육을 받는 자중 그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003.5.27. 일부개정으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됨
  - 정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産學研)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체·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3. 외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현황과 문제점

#### 3.1. 개 관

- 미국·일본의 정부정책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정책과의 비교
  -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의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 정부조직 그리고 지원 방식 등을 분석
  - 일본의 경우 범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 정부조직 그리고 지원 방식 등을 분석
  
- 미국·일본의 법제 동향과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 미국의 경우 미국경쟁력강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원천연구와 관련 주요 입법사항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사항으로 정책수단 및 집행체계 등을 분석
  -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원천연구와 관련 주요 입법사항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사항으로 정부위원회와 관련 계획 등을 분석

#### 3.2. 미 국

##### 3.2.1. 개 요

-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과 개정 경쟁력

강화법 등을 통해 대통령직속의 과학기술정책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산업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항공우주국, 국립해양 대기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여러 부처와 기관이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지원함

- 백악관에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실은 과학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차원에서 확고한 기준을 두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로 과학기술 전반의 정책과 규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제한적임
- 연구개발활동은 결국 각각의 행정기관이 담당 분야에서 독립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주도하고 있음
- 하지만 아래 기술할 미국경쟁력강화법 등의 법으로 여러 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 프로그램 등이 통합정책 하에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범부처적 공조가 법제화된 것이 특징적임

### 3.2.2. 미국 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 □ 제정 배경과 경과

- “기술, 교육, 과학을 의미 있게 증진하는 기회를 창출하는 미국 법(약칭 미국경쟁력강화법)”(The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 of 2007 or

America COMPETES Act)은 2007년 부시대통령이 제정한 법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의 경쟁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제정 목적으로 함

- 2011년 오바마 대통령<sup>1)</sup>이 예산 재배정을 승인함(“America COMPETES Act of 2010”)으로써 동 법에 근거한 공조와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 동 법은 여러 연방기관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데,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을 제1장에서,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제2장에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를 제3장에서, 국립해양대기관리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을 제4장에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를 제5장에서,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제7장에서 각각 규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각의 연방기관이 서로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중요한 국가적 필요 영역에 있어 고위험·고액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 □ 주요 프로그램 및 예산

○ 연구, 교육, 혁신 등 크게 세 종류의 프로그램을 법에 지정해 두고 각각의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집행 전담 기구와 프로

1) 백악관 미국경쟁력강화법 자료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1/01/06/america-competes-act-keeps-america-leadership-target>

그럼의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지정함

- 해양환경연구개발 프로그램, 과학교육 프로그램, 교사 장학 프로그램, 학부학생 참여 확대 프로그램, 박사후과정 프로그램 지원,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지역혁신프로그램 등 각각의 장에서 관여하고 있는 분야의 연구와 교육 등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제 4 장 - 해양과 대기 프로그램

제4001조 해양과 대기 연구 개발 프로그램

제4002조 NOAA해양과 대기 과학 교육 프로그램

제 6 장 - 교육

...

제6114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또는 주요 외국어 교육 석사학위 프로그램

제 7 장 - 국립과학재단

...

제7030조 Robert Noyce 교사 장학 프로그램

제 2 장 국립 항공 우주청(NASA)

...

제2005조 NASA의 학부생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의견

제 7 장 국립과학재단

...

제7008조 박사후 연구원

제 5 장 - 에너지

...

제5012조 고급연구과제-에너지

- 지역혁신프로그램<sup>2)</sup>은 이후 기술할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를 개정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 지역연구단지 개발과 산단 설립을 통해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통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금과 대출보증 등을 통해 지원함

15 USC 3722, 지역혁신프로그램

(a) 설립 - 산업부 장관은 지역혁신클러스터와 과학연구단지를 포함하여 지역혁신전략의 개발을 지원하고 진작하기 위해 지역혁신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b) 클러스터 지원금 -

(1) 일반 - (a)항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업부 장관은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구성과 개발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요건에 맞는 대상에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수여할 수 있다.

...

(c) 과학연구단지개발 지원금 -

(1) 일반 - (a)항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업부 장관은 새로운 과학단지나 기존 과학단지의 개조나 확장 건축 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개발을 위해 지원금을 수여할 수 있다.

...

(d) 과학연구단지 대출 보증 -

(1) 일반 - (2)항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과학연구단지의 개조, 현대화를 포함하여 건축이나 증축 계획에 필요한 대출금의 80

2) 미국 경제개발청 지역혁신전략프로그램 <https://www.eda.gov/oie/ris/>

퍼센트까지 보증할 수 있다.

...

(e) 지역혁신연구정보프로그램 -

(1) 일반 - (a)항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업부 장관은 지역혁신연구정보프로그램을 설립한다.

...

(2) 연구지원금 - 산업부 장관은 본 항에서 설립된 프로그램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을 통해 연구지원금을 수여할 수 있다.

...

(f) 부처간 조율 -

(1) 일반 - 산업부 장관은 본 조항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산업부나 다른 연방부처의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수행되지 않고 조율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보장을 해야 한다.

...

(g) 평가 -

(1) 일반 - 본 법의 제정으로부터 3년이 되기 이전에 산업부 장관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과 계약을 맺고 (a)항에서 설립된 프로그램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

(i) 예산배정승인 - (d)(8)항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000,000이 본 조의 활동((d)항의 대출보증을 제외하고)을 수행하는 것에 배정된다.

- 각 장의 교육, 연구 등 상세 프로그램별 예산을 법에 프로그램과 함께 특별히 정해두는 경우도 있고(지역혁신 프로그램의 경우, 대출보증을 제외한 지원금의 규모를 1억달러로 제한하고 각각 프로그램에서 주어지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법에 둠), 아니면 장마다 각 장에서 담당하는 기관별 예산의 총액을 정하면서 사업별 예산을 대략 나누어 두는 경우도 있음(예를 들어 제

4장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2011년 예산 총액은 9억1천팔백90만 달러인데, 그 중 5억8천 달러 가량은 과학기술연구서비스실험실 활동에, 1억2천 달러 가량은 설비건설과 유지에, 1억 달러 가량은 산업기술서비스활동에 배정하고, 각각의 카테고리 내에서 특정 프로그램별 예산을 따로 배정함)

□ America COMPETES Act of 2007 구성과 주요 내용

○ 8개 장, 116개 조항으로 구성

○ 일반조항

- 혁신과 경쟁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를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위원회는 구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가 구성되었고 이는 대통령 혁신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Innovation and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로 불림
- 동법은 제1장 제1001조에서 국가과학기술정상회의(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ummit)의 개최를,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 현황과 각 부처의 지원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제1002조, 1005조~1007조, 제2006조, 제3004~3005조, 제3011조, 제7007조, 제7010조, 제7016조, 제7032조 등에서 촉구하고 있음

제1002조 혁신의 장애물 연구

- (a) 일반 - 동 법의 제정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이전에 과학기술정책국의 국장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혁신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전통적이 경영상 그리고 재정상 위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파악하고 경감할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하고 완료하기 위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1005조 서비스과학에 대한 연구

- (a) 의회의 결론 - 미국 기업과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국민이 고소득, 첨단기술의 직종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는 서비스과학으로 알려져 있고 새로 부상하는 관리와 학습규율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3004조 전 기관의 계획 보고서

국가기준과학기술연구원법 제23조는 마지막에 다음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 (c) 3개년 프로그램 계획서 - 본 조의 제정 이후 첫해에 의회에 제출하는 대통령의 연간예산요청과 동시에, 국립기준과학기술연구원장은 연구원의 3개년 프로그램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서에는 과학기술연구서비스, 산업기술서비스, 연구설비건설기능 등을 포함해야 한다.
- (d) 3개년 프로그램 계획서 매년 업데이트 - 본 조의 제정 이후 첫해에 의회에 제출하는 대통령의 연간예산요청과 동시에, 국립기준과학기술연구원장은 업데이트 이후 첫 번째 회계연도 3년간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수정된 (c)항에서 제출된 3개년 프로그램 계획서의 업데이트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3011조 국립기준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연구신진학자 영입과 보존에  
의 노력에 대한 보고서

동 법의 제정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기준기술연구원장은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와 상원의 산업과학고통위원회에 국립기준기술연구실  
과 협력연구원에 신진학자와 엔지니어를 영입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007조 학제간 연구

- (a) 일반 - 이사회는 주요 연구 계획 프로그램, 재단이 학제간연구제  
안의 재정지원기회에 대해 과학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의 효과  
성, 학제간 연구 지원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절차 등을 포함  
하여 학제간 연구 지원 전반에 있어 재단의 역할을 평가해야 한  
다. 이사회는 또한 학부 연구소 연구 프로그램이나 학부생 연구경  
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부생들이 학제간 연구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단의 노력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 (b) 보고 - 동 법의 제정 이후 1년 이내에 이사회는 재단의 연구와  
관련 예산 중 학제간 연구에 배정되어야 할 분량에 대한 추천을 포  
함한, (a)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와 상  
원의 산업과학고통위원회,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다.

- 제2003조, 제5006조, 제5011조 등에서 연구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을 지시하고 있으며, 제2005조와 제7025조에서 과학, 기  
술, 공학, 수학 분야 직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학 학부  
의 연구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제2003조 기초연구강화

(a) 일반 -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국장, 국립과학재단의 이사장, 에너지부의 장관, 국방부장관, 산업부장관은 가능한한 최대한 물리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관련한 기초연구활동을 조율해야 한다.

- 또한 제3001조, 제5004.f조, 제5005조, 제 5007조~5009조, 제 5012조, 제6115조~6116조, 제6304조, 제6502조, 제7002조 등에서 각 기관의 전체 예산배정상의 최소금액이나 특정 기관에서 새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지정된 예산의 최소금액 등을 지정함으로써 기초과학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3001조 예산배정의 승인

(a) 과학기술연구서비스

(1) 실험실 활동 - 국립기준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연구와 서비스 실험실 활동에 산업부에 다음과 같이 예산을 배정하도록 허가한다.

(A) 회계년도 2008년 - \$502,100,000

(B) 회계년도 2009년 - \$541,900,000

(C) 회계년도 2010년 - \$584,800,000

(2) 건설과 관리 - 국립기준기술연구원의 시설 건설과 관리에 산업부에 다음과 같이 예산을 배정하도록 허가한다.

(A) 회계년도 2008년 - \$150,900,000

(B) 회계년도 2009년 - \$86,400,000

(C) 회계년도 2010년 - \$49,700,000

(b) 산업기술서비스 - 국립기준기술연구원의 산업기술서비스활동에 산업부에 다음과 같이 예산을 배정하도록 허가한다.

- (1) 회계년도 2008년 - \$210,000,000
- (A) 그 중 \$100,000,000는 국립기준기술연구원법 제28조 기술혁신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 중 최소 \$40,000,000는 새로운 상의 시상에 사용되어야 한다.
  - (B) \$110,000,000은 국립기준기술연구원법 제25조와 제26조의 제조확대파트너십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 중 최대 \$1,000,000는 경쟁지원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
- (2) 회계년도 2009년 - \$253,500,000
- (A) 그 중 \$131,500,000는 국립기준기술연구원법 제28조 기술혁신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 중 최소 \$40,000,000는 새로운 상의 시상에 사용되어야 한다.
  - (B) \$122,000,000은 국립기준기술연구원법 제25조와 제26조의 제조확대파트너십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 중 최대 \$4,000,000는 경쟁지원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
- (3) 회계년도 2010년 - \$272,300,000
- (A) 그 중 \$140,500,000는 국립기준기술연구원법 제28조 기술혁신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 중 최소 \$40,000,000는 새로운 상의 시상에 사용되어야 한다.
  - (B) \$131,800,000은 국립기준기술연구원법 제25조와 제26조의 제조확대파트너십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 중 최대 \$4,000,000는 경쟁지원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

○ 교육조항

- 연방기구의 과학 분야 지원과 공조에 대한 강조와 동일한 무게로 동 법은 기술 분야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바, 법에 따른 장(제6장)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 교육에 할애함

제VI장 - 교육

제6001조 현황

제6002조 정의

A절 - 교사지원

I부 - 경쟁력있는 내일을 위한 교사

제6111조 목적

제6112조 정의

제6113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주요 외국어 학사학위 프로그램과  
교사자격증

제6114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주요 외국어 교육의 석사학위 프로  
그램

제6115조 일반규정

제6116조 예산배정허가

II부 - 선행학습과 국제학부프로그램

제6121조 목적

제6122조 정의

제6123조 선행학습과 국제학부프로그램

III부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의 유망한 전망

제6131조 유망한 전망

B절 - 수학

제6201조 초중등 학생용 수학 지금(Math Now) 프로그램

제6202조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제6203조 중등교육기관 학생용 수학기술

제6204조 주정부 신청서의 동료평가

C절 - 외국어 파트너십 프로그램

제6301조 현황과 목적

제6302조 정의

제6303조 승인 프로그램

제6304조 예산배정허가

D절 교육프로그램의 정렬

제6401조 21세기 고등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전 교육과정 정보 시스템의 지원을 위하여 중등학교졸업요건을 정렬

E절 수학과 과학 파트너쉽 보너스 지원금

제6501조 수학과 과학 파트너쉽 보너스 지원금

제6502조 예산배정허가

- 제6장의 A절(Subtitle A)을 세 개의 부분(Part I-III)으로 나누어 실력있는 과학교사양성을 도모함
- Part I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 대학학부학위와 함께 주요 외국어 교사자격이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교사의 전문지식과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파트타임 석사과정, 전문적인 과학 석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자 함
- Part II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와 주요외국어의 대학과정 선수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대량 양성함으로써 대학과정 선수학습이 가능한 고등학생을 늘리고자 함
- Part III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 교습과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함
- 제6장의 B절(Subtitle B)은 절 제목을 “수학”으로 붙인 만큼 모든 초중등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수준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대수학을 익히고 수학과 기술, 문제해결에 관한 여림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이에 저소득층과 장애가 있는 중학생과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맞춤형 지원

을 제공하도록 함

- 제6장의 C절(Subtitle C)의 제목은 “외국어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주요 외국어 습득의 기회를 늘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주요 외국어의 고도 습득을 가능하게 하도록 목표함.
- 제6장의 D절(Subtitle D)은 “교육 프로그램의 정렬”절로, 대학 이후의 교육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으로 중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임
- 제7장의 E절(Subtitle E), “수학과 과학 파트너십 보너스 지원금”절은 지원금이 필요한 학교 중 주정부차원의 수학과 과학평가에서 가장 큰 점수 향상 폭을 보인 학교에 각각 \$50,000의 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임

○ 국립과학재단<sup>3)</sup>관련 조항

- 국립과학재단은 의학을 제외한 원천과학기술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기관의 목적으로 삼는 유일한 연방기관임

제7018조 주요 국가 과학 필요의 충족

(a) 일반 - 재단의 이사장은 다른 기준에 더하여 재단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 및 연구 활동이 혁신, 경쟁력, 안전 및 보안, 물리 및 자연과학, 기술, 공학, 사회과학, 수학에 대한 중요한 국가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 각종 주요 연구 관련 프로그램<sup>4)</sup>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3) 미국 국립과학재단 <https://www.nsf.gov/>

4) 주요 연구 기기 프로그램, 학부 조기 취업 개발 프로그램, 학부 연구경험 프로그램, 경쟁

데, 2007년 법 제정 이후 2008년 국립과학재단의 정부지원예산은 66억 달러였다가 2010년에는 81억3천2백만 달러로 증가함

- 국립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경우 제7008조에 향후 박사후과정생에 대한 멘토링 계획을 세워둘 것, 제7009조에서 학부, 대학원, 박사후과정생 모두에게 책임 있는 연구태도에 대한 훈련을 제공할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제7010조와 7011조에서 최종보고서를 공유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제7008조 박사후 연구생

- (a) 멘토링 - 박사후연구생을 지원하는 자금지원신청서는 연구생에게 제공될 멘토링 활동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이 재단의 광범위영향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멘토링 활동이란 직업상담, 지원서 작성준비 훈련, 교습방법에 대한 지도, 연구 윤리에 대한 훈련 등을 포함한다.
- (b) 보고서 - 박사후연구생 지원금이 포함된 연구지원금의 연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는 해당 연구생에게 제공된 멘토링 활동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제7009조 책임있는 연구활동

재단에 과학공학연구나 교육으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원은 지원서에 기재된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생에게 제공될 책임있고 윤리적인 연구활동 훈련과 감독 계획을 지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7010조 연구결과보고

---

연구 자극을 위한 실험 프로그램, 통합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훈련생 프로그램, 대학원 연구 펠로쉽 프로그램, 전문가 과학 석사 프로그램, 수학 과학 교육 파트너십, 로버트 노이스 장학프로그램, 과학, 수학, 공학, 기술 재능 개발 프로그램, 고급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재단에 의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은 연구 문서의 인용이나 모든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는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속하게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제7011조 연구결과의 공유

재단지원금정책매뉴얼 제7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재단지원금수급연구자는 향후 재단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후 재단지원금정책매뉴얼 제734조를 따르고 재단에서 요구하는 다른 조건들을 따르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복원될 수 있다.

- 또한 동법은 제7032조에서 국립과학재단이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으로 하여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영역의 소수자가 마주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그리고 소수자를 더욱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 America COMPETES Act of 2010 구성과 주요 내용

- 산업부(Department of Commerce),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백악관 등 네 개 기관을 연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금 증액과 교육지원**을 규정하는 법임
- 제1장 과학기술정책실 관련 조항
  -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내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의 지원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과 활동을 조율할 국립과학기술의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sup>5)</sup>를 설립하도록

5) 국립과학기술의회 <https://www.whitehouse.gov/ostp/nstc>

하였는데, 의회의 의원들은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미국항공우주국, 에너지대기관리국, 교육부, 예산처, 그리고 기타 기관들의 대표자로 구성되도록 하였음

제101조 연방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의 조율

(a) 설립 -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관리예산실을 포함한 국립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지원 활동과 프로그램이 있는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항공우주국, 국립해양대기청, 교육부, 기타 연방 부처를 포함하여 모든 과학/기술/공학/수학 연방 프로그램과 활동을 조율하게 해야 한다.

- 의회 설립의 목적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활동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5개년 계획을 개발, 실행 하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프로그램의 목록을 만들고 업데이트 하여 각 프로그램의 효율과 여성, 소수자 등의 참여율을 평가하고 문서화함에 있음
- 제1장 102조에서는 상술한 국립과학기술의회내에 기술위원회를 두어 고급제조연구와 발전경과를 연방기관들과 조율하고 미국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함

제1장 제102조 고도의 제조 연구 개발의 조율

(a) 범부처 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국립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기술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고도제조연구개발에 대한 연방프로그램과 활동을 계획하고 조율할 책임을 진다.

...

○ 제2장 미국항공우주국<sup>6)</sup> 관련 조항

- 미국항공우주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증진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과자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우주과학 분야의 소수자그룹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결과 보고서를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와 상원의 상업, 과학, 교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3장 국립해양대기청<sup>7)</sup> 관련 조항

-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 동 법은 국립해양대기청에 미국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립해양대기청의 연구, 관찰, 통제, 예측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지원하도록 함

제4001조

(b) 해양대기연구개발프로그램 - 국립해양대기청장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도입해야 한다.

- (1)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서비스의 국립해양대기청의 연구, 관찰, 모니터링, 예측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흥 혁신연구와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

- 또한 국립해양대기청은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 해양과 대기과학 분야에 있어 미국의 리더쉽을 도모하고 해양, 연안, 오대호,

6) 미국 항공우주국 <https://www.nasa.gov/>

7) 국립해양대기청 <http://www.noaa.gov/>

대기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기타 관련 연방 기구들과 학교, 민간 부문, 비정부 프로그램들과 함께 연대하여 고급 수준으로 발전시킴

-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국립해양대기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지원해야 함

○ 제4장 국립표준기술연구소<sup>8)</sup> 관련 조항

-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인증법(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uthorization Act of 2010)으로도 불림
- 2011년에 9억1,890만 달러, 2012년에 9억 7,080만 달러, 2013년에 10억1,970만 달러가량의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연구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사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꾸준히 증가, 확보함
- 405조에서는 비상시에 지하 탄광이나 붕괴된 빌딩 등의 폐쇄된 공간에 갇힌 인명을 감지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계획을 세움
- 408조에서는 제조업에 사용될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기준의 발전을 도모하여 에너지 효율과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한 환경 친화적인 건물로 건축의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함

○ 제5장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지원 프로그램 관련 조항

---

8) 국립 표준기술연구소 <https://www.nist.gov/>

- 제5장은 국립과학재단 부분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훈련 지원금 프로그램 부분으로 나뉨
- 국립과학재단에는 2011년에 74억 달러 가량, 2012년에 78억 달러 가량, 2013년에 83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기초연구의 지원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며, 연구 분야로는 나노제조업, 제조업과 건설 기계와 장비 등을 포함함

제506조 국립과학재단 제조업 연구와 교육

(a) 제조업 연구 - 국립과학재단의 총재는 향상된 기술을 통해 미국 제조를 지원할 제조 기술, 공정 및 기업의 혁신적인 진보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 교육 기관에 우수한 연구비 및 경쟁 지원금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해야한다

- 국립과학재단의 총재는 또한 잘 훈련된 제조업 기술자 양성을 위해 재단의 고급 기술 교육 프로그램(Foundation's Advanced Technological Education Program)을 통해 제조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함
- 재단의 총재는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자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학부생에게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의 기회를 도모함. 또한 소수민족학생의 대학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석사나 박사과정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함
- 또한 재단의 총재는 산업계, 정부기관, 연구실험실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학위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을 강조하는 석사와 박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혁이나 확장을 도입하는 고등교육기관에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수여함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훈련 지원금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의 초등, 중등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사 과정을 밟을 학생을 모집하고, 준비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부로 하여금 해당 프로그램을 설립, 이행, 협력하도록 함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계획하며, 교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함
- 매년 경쟁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수여하는데, 그 중 150만 달러는 사용처를 명확히 지정함. 150만 달러는 프로그램의 구성, 도입, 평가; 현장 실습을 관장할 교사의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과목의 개발과 도입 지원에 사용되며, 나머지 50만 달러는 프로그램을 본떠 만들 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평가에 사용될 자금으로 지정함

○ 제6장 혁신 관련 조항

- 동법을 통해 산업부는 “혁신과 창업가정신국(Office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sup>9)</sup>을 설립하여 미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신기술, 물품, 체계, 서비스의 혁신과 상업화를 꾀함

9) 혁신과 창업가정신국 <https://eda.gov/oie/>

- 혁신과 창업가정신국은 혁신을 선도하고 연구개발의 상업화를 도모할 정책을 개발할 책임을 지는데,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활동으로는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진행된 연구개발, 자본이나 기타 자원 등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등 혁신과 상업화에 있어 현존하는 장애물을 판별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 중소기업이나 농촌지역에 집중하여 혁신과 상업화에 관련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동을 강화하는 활동 등이 있음
- 연방정부보증대출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제조설비를 도입하거나 재설치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동 법은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와 연구단지 설립 등의 지역혁신전략의 개발을 연방정부차원에서 타당성평가, 계획, 기술원조, 클러스터간 연계, 지방정부간 조율 등의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권장함

○ 평가보고서

- 법에 의해 작성, 제출된 평가 보고서는 의회의 검토를 거쳐 2012년에 공개된 바 있는데, 법에서 시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성토했. 또한 보고서는 미국 교육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고,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 개발, 교육, 정보 인프라의 개선이 고용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함

3.2.3. 국가과학기술정책, 조직, 우선순위법(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Act of 1976)

□ 국가과학기술정책, 조직, 우선순위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 동법은 과학기술정책실로 하여금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결정할 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과 결과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도록 함
  - 과학과 기술의 국내외적 업무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에 조언을 제공함
  - 과학과 기술의 정책과 예산을 적절히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범기관간 노력을 선도함
  - 연방정부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번영, 환경질 개선,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기업과 공조함
  - 연방, 주정부, 지자체, 외국, 과학 분야 커뮤니티 등과 강력한 파트너쉽을 이룸
  - 과학과 기술 분야 연방정부의 여러 노력을 가늠하고, 품질을 측정하며 효율을 평가함

3.2.4. 스티븐슨 - 와이들러 기술혁신법(Stevenson - Wydler

## Technology Innovation Act, 1980)

###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실험실에서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술을 비연방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손쉽게 하고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연방실험실 기술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이와 같이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 연구실 예산의 일정 비율을 기술이전에 사용될 예산으로 지정하도록 함
- 연구와 기술적용국(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ORTA))을 설치하고 연구소간 기술이전을 활발히 하기 위해 200명 이상의 과학, 공학, 기술 관련 연구 인력이 있는 연구소 당 최소한 1명 이상의 인력으로 연구와 기술적용국을 구성함
  - 산업부 내에 기술청을 신설하였음 (2007년 폐지됨)
  - 이후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6)의 제정으로 대폭 수정됨

### 3.2.5. 특허 및 상표법 수정법(Bayh-Dole Act, Patent and Trademark Law Amendments Act, 1980)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생산한 연구업적의 일관된 특허정책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임
-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제작된 발명의 소유권에 관하여 큰 변화를 불러일으킴
  - 법 제정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생산한 발명의 경우 연방정부의 소유가 되었으나 동법 제정 이후에는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등의 경우 정부에 앞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전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특허권을 29,000건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중 5% 미만만이 상업적으로 활용되었음

3.2.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 제정 목적과 배경

-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기술혁신분야에 소수자와 약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을 통해 사기업의 혁신, 상업화를 증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 2012년 국방예산재배정 시 함께 예산 배정이 되어 2017년까지

## 지 유효함

### □ 주요 내용

- 미국의 국가경제부흥을 위해 주요 분야에 한해 연방 연구 개발 자금의 투자를 통해 과학,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을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 필요 재정은 1억 달러 이상 연구예산이 있는 연방기관 11개의 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각출하여 마련하였는데, 국방부가 연간 천만달러가량을 지원하여 가장 큰 재원을 제공하는 연방기관이 되었음
  -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 중 절반 이상은 직원 25인 미만의 회사이고 1/3은 직원 10인 미만인 회사이며 1/5은 소수 민족이나 여성기업임. 1/4 가량은 처음 지원을 받는 기업임.
  - 국방부 이외에도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재단, 농림부 등에서 재원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함
-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모색함
  - 시작단계인 1단계에서는 아이디어나 기술의 효용이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최고 15만 달러를 약 6개월 동안 지원함
  - 1단계의 결과를 실현에 옮기는 2단계에서는 최고 백만 달러까지 2년에 걸쳐 지원하는데, 연구개발 업무가 실행에 옮겨지고

개발자는 상업화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임

- 혁신의 결과물이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하는 단계인 3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자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기업은 사적으로 또는 다른 연방정부재원을 알아보아야 함
- 기관의 연구개발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곳은 반드시 중소기업 혁신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매년 다음과 같은 비율의 예산을 중소기업관련 지원금으로 책정해 두어야 함
  - 1997년에서 2011년까지는 2.5%
  - 2012년에는 2.6%
  - 2013년에는 2.7%
  - 2014년에는 2.8%
  - 2015년에는 2.9%
  - 2016년에는 3%
  - 2017년과 그 이후에는 3.2%

### 3.2.7. 시사점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실 이외에 독립된 과학기술 전담 부처는 없고, 각각의 행정기관이 담당 분야에서 독립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주도하는 체계이며, 따라서 각각의 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각각의 전문 분야와 영역에서 나름의 과학기술연구를

진행하는 각각의 부처를 통합·규율하는 종합적인 과학기술기본 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각자의 과학기술 정책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실행함

-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서는 미국경쟁력강화법을 통해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지원책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있어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미국경쟁력강화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직속의 과학기술정책실은 과학 원천연구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확고한 기준을 두고 산업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항공우주국, 국립해양대기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여러 부처와 기관의 지원과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를 통해 연방 정부의 여러 부처의 공조를 꾀하고 있고, 자금 지원 정책이 매우 뚜렷함
- 또한 과학기술 중에서도 과학, 공학, 수학, 기술 등의 주요분야를 특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과확산과 기술이전을 통해 상업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함
- 하지만 과학, 공학, 수학, 기술의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이외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정책이나 제도는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3.3 EU와 유럽 주요국<sup>10)</sup>

### 3.3.1. 개 요

-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복구와 기술적으로 앞서간 국가와의 기술격차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함
- 2000년에는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유럽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을 과학기술에 기반하고자 하는 리스본전략<sup>11)</sup>을 추진했고, 2010년에는 ‘유럽 2020’을 채택하여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을 목표로 G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고자 하였음
- 연구개발활동은 결국 각각의 행정기관이 담당 분야에서 독립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주도하고 있음
- EU 회원국은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유럽연합의 공통전략을 반영하고 있음

### 3.3.2. EU

#### □ EU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양상과 집행 체계

- 제2차 세계대전-1975년까지의 제1단계,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제2단계,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제3단계 등 세 단계로 나뉨
  - 제1단계(제2차 세계대전-1975년): 과학과 국방의 결합으로

10) 양승우 외,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2)의 113면부터 137면 중 관련 내용을 참조

11) 유럽의회 리스본전략 [http://cordis.europa.eu/programme/rcn/843\\_en.html](http://cordis.europa.eu/programme/rcn/843_en.html)

정치적 목표 달성하고자 함. 기초과학과 고등교육에의 투자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혁신 모델 채택함

- 제2단계(1975년-1995년):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함.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로 유럽연구기술공동체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함.
- 제3단계(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와 기술혁신의 결합 추구함.<sup>12)</sup>

○ EU집행위와 회원국 연구담당 각료회의간 협의 통해 EU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EU 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확정됨.

- EU 집행위: 행정부처의 역할 - 법안 발의, 제반정책 집행
- EU 집행위 연구담당 집행위원, 산하 연구총국(DG RTD), 공동연구센터 총국(DG JRC): EU 내 과학기술 관련 업무 담당 - EU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R&D사업 시행함
- EU 공동연구센터: 유럽 연구각료이사회가 결정하고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한 세부 프로그램 수행함.

## □ 과학기술 프로그램

○ 유럽집행위원회 주도 연구개발프로그램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sup>13)</sup>, EU 가 지원하고 유럽회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레

12) 신용대·김경유, “유럽연합의 과학기술정책 현황과 시사점”, 「EU연구」제6권,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0, 165-188면.

13) 유럽연합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7 [https://ec.europa.eu/research/fp7/index\\_en.cfm](https://ec.europa.eu/research/fp7/index_en.cfm)

카(EUREKA European Research Coordinative Agency)와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ical Research:COST), 그리고 민간주도 공동개발의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유럽핵물리연구센터(Centre European Recherche Nucleaire: CERN)등의 활동이 있음.

#### □ EU 과학기술 법제

- EU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면,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화 하여 이행하는 유기적 연계관계가 특징적임
- 2005년 수립한 “신리스본전략”<sup>14)</sup>에 따라 R&D정책을 강화하여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활용을 도모함
  - 과학기반 강화, 기술혁신 장려, R&D 지출 확대, 민관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강한 산업기반 구축을 이루고자 함
- 2010년 “유럽2020” 전략을 채택, 스마트성장/지속적성장/포괄적성장의 3대 아젠다와 이의 실현을 위한 5대 핵심목표를 설정함
  - R&D 투자 관련 목표치를 GDP 대비 현재의 1% 수준에서 3%로 확대 계획을 세움으로써 연구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발전이

---

14) Europe 2020: The New Lisbon Strategy, Sociaal-Economische Raad, 2009, available at [https://www.ser.nl/~media/files/internet/talen/engels/2009/2009\\_04.ashx](https://www.ser.nl/~media/files/internet/talen/engels/2009/2009_04.ashx)

유럽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확실히 내세움

### 3.3.3. 영 국

#### □ 영국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

- 영국 과학기술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혁신부(BIS), 총리와 내각에 과학기술 자문과 보고의 역할을 하는 정부수석과학자문관(GCSA), 각 부처에 자문을 제공하는 수석과학자문관(CSA), 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역할을 하는 정부과학국(GO-Science),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독립 자문기관인 과학기술위원회(CST)등이 영국 과학기술정책을 지원하는 행정기구임
- 기업혁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산하 연구위원회에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기금을 연구지원에 사용함. 연간 46억 파운드의 연구자금을 과학 및 연구분야에 지원함
- 정부수석과학자문관(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 GCSA)는 총리와 내각에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자문과 보고를 맡아 정책 조언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자·학계와 정책결정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
-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이 총리와 내각에 자문역을 맡았다면, 수석과학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or: CSA)는 각 부처에 과학

정책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함

- 정부과학국(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GO-Science)는 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며 모든 정부 과학정책에 자문을 제공함
- 과학기술위원회(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CST)는 과학기술 관련 최고의 독립 자문기관으로, 학계와 산업계의 저명인사를 수상이 임명함.

□ 영국의 과학기술 법제: 과학기술법(Science and Technology Act of 1965)

○ R&D 촉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법에 규정함

- 총 7개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연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에 지나지 않고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과학기술 담당 부처 장관이 연구위원회의 재원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하여 연구위원회가 장관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함

□ 영국의 과학기술 법제: 영국기술기구법(British Technology Group Act of 1991)

○ 국립기업위원회(National Enterprise Board)와 국립연구개발회사(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의 민영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NEB와 NRDC를 합병하여 영국기술기구

(BTG)를 설립하였음

- BTG는 공기업이었으나 이후 민영화되었고 현재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분야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음.<sup>15)</sup>

### 3.3.4. 독일

#### □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

-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과학기술정책을 주관하며 R&D 프로젝트와 연구기관 지원을 담당하고, 과학산업연구회 등 자문기관이 있음
- 헬름홀츠 연구협회,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등 공공 연구기관이 있고, 이에 대한 펀딩 지원도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담당함
- 여러 연구기관, 자문기관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을 마련하는데, 또한 분야별로 각 관련 연방부처와 협업함

#### □ 독일의 과학기술 법제

-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 대학과 연구소의 자유로운 연구 경쟁을 유도하고, 국가는 자금지원과 방향제시 정도의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 법제를 주로 규제법제로 설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할 뿐임

---

15) BTG (British Technology Group)는 약 180명의 기술전문가, 변리사, 변호사, 금융 및 마케팅 전문가 등이 1,400여 기술분야의 1만 여개의 기술특허를 관리하고 연간 약 45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양승우 외,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재인용

- 일반적으로 허가사항인 경우에도 연구목적의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줌
  - 조세통칙법상 연구시설 등 공익목적의 자금을 세제혜택을, 과세물평가법에 의해 연구관련 동산·부동산·발명품·저작물에 대해 세제혜택을 줌

### 3.3.5. 프랑스

#### □ 프랑스 과학기술 행정 체계

-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부처별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과학기술 연구부처간협의회(CIRST)가 있고, 협의회의 주무부처는 고등교육연구부(MESR)임
  - 과학기술 사안별 관련 정부부처, 민간전문가, 산업계 등 참여함
  - 관련 연구기관과 협의 통해 투자우선순위, 연구개발사업조정, 연구환경 안정화 조치 강구 등 안건을 결정함
-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계획 수립, 사업 수행 등은 고등교육총국과 연구혁신총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교육연구부(MESR)가 이행함
  -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은 주로 연구혁신총국에서 담

당하는데, 연구혁신전략서비스, 계약서비스, 기술이전 및 지역  
활동서비스 등을 수행함

- 자문, 협의 조직으로 과학기술고등위원회가 있는데, 「연구프로그램지원법(la 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에 의해 설립되었고, 연구, 기술이전, 기술혁신에 관하여 총리와 각료에 자문을 제공함
  - 고등연구부 장관의 자문조직으로 연구기술고등심의회가 있는데, 이는 민관연구개발예산의 배분, 연구기술개발 연차보고서, 과학기술 전망분석보고서, 연구조직개혁프로젝트 등의 자문을 담당함
  - 연구기관으로는 기술정보확산기관, 국립연구청, 우주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소, 프랑스 학사원, 프랑스 수산연구소 등이 있음
  - 이밖에 프랑스혁신정책지원기관과 프랑스중소기업은행이 통합되어 신설된 프랑스혁신청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업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업무를 맡아 수행함
- 프랑스의 과학기술 법제
- 전통적으로 강력한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왔으나 2000년 이후 연구자의 비정규직 채용문제 등 과도한 정부주도의 R&D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음
  - 연구협약(Pacte pour la recherche)에 기초하여 2005년 국립연구청(ANR)을 설립,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을 지

원하기 시작했음

- 연구전반의 균형적 발전, 연구주체의 연계, 사회와 연구간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을 3대 원칙으로 두고 국가와 연구부문 간의 협약을 재정비함
  - 연구부문을 기초연구, 사회지향적 연구, 경제지향적 연구의 3대 연구영역으로 구분하여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 연구주체간 연계는 학연합동연구클러스터(PôPles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Supérieur; PRES), 대규모 주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캠퍼스,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공공분야와 민간기업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함
  - 장기적 발전전략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연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여 과학기술고등위원회(HCST), 연구기술고등심의회(CSRT), 과학기술연구부처간협의회(CIRST) 등을 신설함
- 프랑스 「연구법(Code de la Recherche)」을 개정하여 「연구프로그램지원법(la 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을 제정하였고,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음
- 총 6개 절 51개 조항으로 구성된 연구프로그램지원법은 연구법과 노동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충함
  - 연구재정지원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연구조직을 구조적으로 개

혁하도록 하며 연구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함. 또한 연구평가 기관으로 독립행정기관인 연구평가청을 신설함

- 연구분야의 법적·제도적 틀을 조정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 연구 목표에 평가능력 개발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원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등 연구성과의 산업화 절차를 간소화함
- 연구활동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 적용을 면제하는 등 연구를 장려하였음

### 3.4 일 본

#### □ 개관

- 일본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기초과학의 강국임을 입증했고, 이로써 총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음
- 이러한 성과는 1980년~1990년대에 기초과학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많은 성취 덕분이라고 평가됨
-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의 기세가 꺾이는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회는 기술적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기초·원천 연구의 중요성이 법제를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3.4.1.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법률 체계

□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

- 기초·원천 연구와 관련된 법으로는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 할 수 있음.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19개조의 비교적 간결한 조문형태를 지니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에 의해 일본의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본 경제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 그리고 아울러 세계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사회의 지속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을 선언하고 있음(법 제1조)
  - 다만, 그 과학기술의 대상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련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정하여 이를 실시할 책무를 가지고(제3조),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과학기술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9조)
  -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의 구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 시책 책정권을 가지는 범위에서 국가와 같은 책무가 부과되고 있음(제4조)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연구개발(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연

구를 말한다)의 추진에 관한 방침을 정하는 것과 연구시설 및 연구설비의 정비, 연구개발 관련 정보화의 촉진 등에 관한 것으로(제9조 제2항), 정부가 이를 책정함에는 반드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라는 별도 기구의 논의를 거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 제3항)

- 바로 이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이야말로 일본과학기술정책 및 법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연구개발추진 방침을 결정하고 향후의 예산배분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고, 또한 총리대신이 이 회의의 의장이 됨으로써 그 기구의 권위를 높임은 물론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담긴 정책의 집행력을 고도로 제고시켜줄 수 있기 때문임
-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금융상 조치 기타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7조)고 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등에 따라 일정한 법적, 재정적 실현 수단이 동원되게 됨을 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은 특히 국가가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에 대한 균형잡힌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국가로서 특히 진흥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기획과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여(법 제10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초·원천연구를 촉진하도록 특히 강조하고 있음

- 법은 이외에도 연구자의 확보와 연구시설등의 정비,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화의 촉진, 연구개발관련 교류의 촉진, 자금의 효과적 사용과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 그리고 국제적 교류등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11조 - 제19조)

□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기타 법률

- 일본은 기초·원천연구<sup>16)</sup>를 매우 강조하면서도 기초·연구의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일본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기초·원천연구를 강조하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기초·원천연구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기존의 기구들과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초·원천연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다만,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기구들을 독립법인 형태로 조직하는 일부 법률을 두고 있음
  -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기존의 기구들로는 정부의 과학기술 총괄부처로서 문부과학성이 있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자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지원을 추진하는 일본학술진흥회(JSPS)와 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있

---

16) 일본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자체에서 연구개발의 종류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3종으로 정하고 있다. 응용연구도 기초연구를 이용한 것으로서 다른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기초·원천연구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음. 따라서 이들 기구들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이들 법률에서 각 기구들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문부과학성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로서 「문부과학성설치법(文部科学省設置法)」이 있음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서 근거조항을 두고 있고,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령(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令)」에 의해 구체적인 조직과 업무를 정하고 있음
  -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学術振興会, JSPS(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는 천황이 기금을 출자하여 1932년 설립된 기구로서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직법률이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법(独立行政法人日本学術振興会法)」이 2002년에 제정되어 있음
  - 과학기술진흥기구(科学技術振興機構,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출연기구로서 그에 관해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법(國立研究開発法人科学技術振興機構法)」이 2002년에 제정되어 있음 (유사한 형태로 「국립연구개발법인 방재과학기술연구소법(國立研究開発法人防災科学技術研究所法)」, 「국립연구개발법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법(國立研究開発法人量子科学技術研究開発機構法)」 등이 제정되어 있음)

### 3.4.2.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제도 체계

#### □ 문부과학성

- 2001년 文部省와 科学技術庁를 통합하여 발족한 정부부처로서 과학기술과 학문, 교육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이고, 과학기술연구개발, 학술진흥 등을 그 사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문부과학성설치법(文部科学省設置法)」 제4조) 기초·원천연구의 촉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그 산하에 과학기술학술심의회(科学技術·學術審議會)를 둬으로써 과학기술의 종합적 진흥과 학술진흥에 관련된 조사 및 심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5년에 한번씩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내각총리대신 및 내각을 보좌하는 지체의 장으로 국가전체의 과학기술 진흥을 목표로 설립된 기구로서 내각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내각관료 등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됨
- 이 기구는 중요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산하에 다음과 같은 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있음.
  - ① 기본계획전문조사회 ② 과학기술혁신정책추진전문조사회 ③

- 중요과제전문조사회 ④ 평가전문조사회 ⑤ 생명윤리전문조사회  
⑥ 경제사회·과학기술혁신활성화위원회

- 현재는 2016-202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2016년에 결정하여 마련함).<sup>17)</sup>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대변혁을 맞아 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주안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혁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음

- ① 미래 산업창조와 사회변혁을 향해 새로운 가치창출의 대처 : 최근의 대대적인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대변혁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되는 “초스마트사회(超スマート社會)”를 선취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함
- ② 경제·사회적 과제에의 대응 : 국내와 글로벌 수준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제에 선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를 설정해 과제해결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대처를 추진함
- ③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역량 강화 : 미래에 제기될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젊은 인재의 육성, 활약촉진과 대학의 개혁·기능강화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적인 역량을 발본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지향함
- ④ 혁신창출을 향한 인재, 지식, 자금의 순조로운 순환 시스템 구축 : 국내외의 인재, 지식,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그 사회적 실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업-대학-공적

17)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헤이세이(平成)29년판(2017년판) 「과학기술백서」 참조([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kagaku.htm](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kagaku.htm))

연구기관의 본격적 제휴와 벤처기업의 창출강화등을 통해 인재-지식-자금이 기존의 장벽을 넘어 상호순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혁신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양방향의 지원체계

- 일본학술진흥회와 과학기술진흥기구는 각각 별도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 양자의 기능이 결합하여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음
- 일본의 기초·원천연구 지원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위에서 아래로 정책이 추진되는 탑다운(top down) 방식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이 있음
-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술진흥회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비조성사업”은 일본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적 기술연구를 위에서 아래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방식이고,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추진하는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신기술 씨앗 창출)”은 연구자의 독창적 제안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추진되는 지원 방식임

□ 과학기술혁신지원체계의 요약

- 총리대신이 의장으로 참여하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 의한 정책결정 및 다양한 절차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기반하여 국립시험연구기관, 국립연구개발법인, 대학등에서 연

구의 실시와 각종 연구제도에 의한 연구추진 및 연구개발환경 등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문부과학성은 각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의 작성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의 조정을 행하는 한편 첨단·중요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의 실시, 창조적·기초적연구의 충실한 강화등을 위한 조직체계마련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산하에 과학기술학술심의회를 설치하여 문부과학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과 학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조사와 심의를 수행하고 문부과학대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과학자집단의 대표적 학술기관으로는 일본학술진흥회가 있어서 정부정책과 과학자들의 연구개발을 연결하는 양자간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참고 1 - 헤이세이28년(2016년)판 「과학기술백서」중 기초·원천연구관련 내용

- 문부과학성이 발간한 2016년판 「과학기술백서」는 2016-2010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그 방향과 수행수단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음. 특히 기초·원천연구와 관련하여 상당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sup>18)</sup>

18)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헤이세이(平成)29년판(2017년판) 「과학기술백서」 258-278쪽 참조([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kagaku.htm](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kagaku.htm))

○ 독창적이고 다양한 기초연구를 강화함

- ① 문부과학성 및 일본학술진흥회가 실시하는 ‘과학연구비조성사업’에 의해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독창적 연구활동을 지원함
- ②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실시하는 ‘전략적 창조연구진흥사업(신기술 씨앗(seeds) 창출)’과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가 실시하는 ‘혁신적 첨단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한 목표 아래에서 대학등의 연구자의 제안을 공모해 조직·분야의 벽을 넘어 일정기간동안 지속하는 연구체제를 구축해 전략적인 기초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유망한 성과 있는 연구를 심화·가속시킴
- ③ 대학·대학공동이용기관의 공동이용·공동연구거점으로 정비된 시설·설비 및 자원·데이터 등을 연구자가 개개조직의 벽을 넘어 공동으로 활용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공동연구를 촉진함

○ 세계 톱레벨의 기초연구를 강화함

- ① 세계톱레벨연구거점을 구축하여 1거점당 13-14억엔정도의 지원을 10년간 행함
- ② 세계수준의 우수한 연구대학군을 증강하기 위해 연구대학강화촉진사업을 벌임

○ 이상의 내용과 아울러 과학기술을 담당할 인재의 육성을 위해

- ① 대학원교육의 발본적 강화 ② 박사과정에서 진학지원 및 박사후 연구자를 대상으로 경력창구를 다양화, 연구자의 경력창

구를 다양화하여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자층을 지속적으로 양성함

- 더불어 국제수준의 연구환경 및 기반의 형성을 위해 ①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환경의 정비와 첨단연구시설 및 설비의 정비, 공동이용촉진을 추진하고 ② 지적기반과 연구정보기반의 정비를 통해 실험재료의 안정적 공급,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공 등을 추진·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참고 2 - 헤이세이29년(2017년)판 「과학기술백서」중 기초원천연구관련 내용

- 2017년판 과학기술백서에는 2016년 노벨생리학·의학상 수상을 계기로 일본의 기초과학력 강화를 향한 정부대응을 위해 문부과학성 내에 ‘기초과학력의 강화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과 대응을 내놓고 있음<sup>19)</sup>
- 일본의 기초과학력의 동요와 3가지 위기
  - ① 연구의 도전성·계속성을 둘러싼 위기(연구비·연구시간의 열악화) : 일본내 대학에서 장기적 연구를 가능케 했던 기반적경비가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 연구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연구시간도 감소가 현저하여 기초과학연구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문제가 됨

19)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헤이세이(平成)29년판(2017년판) 「과학기술백서」 13-19쪽 참조([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kagaku.htm](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kagaku.htm))

② 차세대를 담당할 연구자를 둘러싼 위기(젊은 연구자의 고용·연구환경의 열악화) : 대학의 기반적 경비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의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교원 및 연구원수가 줄어들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조건 및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불안이 젊은 층 연구자로 하여금 장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음

③ 지식의 집적을 둘러싼 위기(연구거점군의 열악화) : 탑10% 논문수의 비교에서 일본의 대학은 독일대학에 비해 상위권 대학은 그 수가 많으나 중위권 이하 대학으로 가면 독일보다 상당히 뒤처지고 있어 연구와 지적 기반이 상위권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상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기초과학력의 강화를 위해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자 하고 있음

① 연구의 도전성·계속성을 둘러싼 위기에의 대응책 : 연구비의 안정적 확보와 충실화를 위해 “도전적연구”항목을 창설하고 젊은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연구비 젊은연구자 지원계획”을 실시함

② 다음세대를 담당할 연구자를 둘러싼 위기에의 대응책 :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박사후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특별연구원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연구자를 목표로 하는 지원의 충실화를 기하고 “탁월연구원제도”를 개선·확충함

③ 지식의 집적을 둘러싼 위기에의 대응책 : 세계에 열린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톱레벨연구거점 프로그램”의 충실한 수행에 의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거점의

형성지원, 연구정보기반의 정비, 우수한 연구환경·연구기반시설의 충실을 도모함

### 3.3.3. 시사점

####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한 정책적 지원

- 일본은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총리대신이 직접 의장이 되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 의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세움으로써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동원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헌법상 과학기술에 대한 조항이 있고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일본에 비해 과학기술의 역사와 기초가 약한 상황이므로 더욱 정책적으로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기초·원천연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해 보이고,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대통령이 관여하는 형식의 회의기구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역할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종합적 관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기초·원천연구 강

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적, 제도적 토대가 강화되어야 만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의 기초·원천연구개발을 중장기적인 전망하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양방향의 지원체계

- 일본은 양방향의 지원체계를 통하여 정부주도와 연구자의 창조성을 결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양방향의 지원체계는 매우 유사하므로, 이를 기초·원천연구 강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기초·원천연구를 촉진하고 이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원천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4. 현행법의 체계와 정비 방향

### 4.1. 개 관

#### □ 통합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방향설정

##### ○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과 연혁

- 과학기술관련 사항은 다수 부처 소관과 관련이 있음

※ 과거 과학기술처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부가 아닌 처로 설치되어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헌법상 행정각부 통할권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임

제25조(과학기술처) 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 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 과학기술처를 이어받은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종전과 같은 관계각부 통괄 조정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

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조직법상 부처서열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이어 제3위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가 비록 부총리 부처이기는 해도 그 소관업무 중 과학기술에 관하여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헌법에서도 3공화국 이래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 경제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진흥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지금도 그러한 정신이 남아 있음

<헌법상 과학기술조항의 변천>

[제3공화국헌법]

제118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심의회회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경제·과학심의회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유신헌법]

제12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5공화국헌법]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현행헌법]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법제처의 위헌론에 막혀 좌절되었음

※ 이는 당시 법제처의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된 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러한 지위를 승계하여야 할 것임

○ 현행 법체제

－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각 분야 작용법으로 구성됨

- 기본법에서 구체적인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민방위기본법 등 다수의 기본법에서 입법정책의 기본방향 외에 구체적인 작용까지도 함께 규정한 것과 유사
- 과학기술분야의 작용법으로는 기술개발촉진법을 이어받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등 다수의 분야별 입법이 존재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에서는 구체적인 작용법의 성격을 갖지만,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등과의 관계에서는 기술개발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한 점에서 약간의 기본법적 성격도 가짐

구분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목적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법률체계	제 1 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등의 책무 및 과학기술인의 윤리,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제 2 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 1 장 총칙 :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의 지원 제 2 장 기초연구진흥 : <u>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기초연구진흥정책등, 대학의 기초연구환경조성,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등,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학술단체활</u>

구 분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p>제 2 장의 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p> <p>제 3 장 과학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u>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u>,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등,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과학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u>기초연구의 진흥, 기초연구진흥협의회</u>,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u>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술창업 활성화등</u>,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산학연협력촉진, 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간 연계촉진,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p> <p>제 4 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p>	<p><u>동지원, 국제공동연구지원,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u></p> <p>제 3 장 기술개발지원 : <u>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연구수행기관등에 대한 출연, 기술개발지원</u></p> <p>제 4 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 <u>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참여제한</u></p> <p>제 5 장 보칙 및 벌칙 : 사후관리, 권한의 위탁, 감독명령등,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태료</p>

구 분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 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 과학기술지식·정보등의 관리·유통,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촉진 및 기반조성,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과학연구단지등의 조성 및 지원,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과학기술인의 우대등,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과학기술관련비영리법인·단체의 육성, 연구안전환경의 조성, 과학기술관련규제등의 개선,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비 고	밑줄 친 부분은 기초과학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기초과학이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서 기본적 지위에 가짐을 시사	위 밑줄 친 부분은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분야에서 기본법적 성격의 규정에 해당

○ 법체계 정비방안

- 1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여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등 분야별 법제를 통합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의 내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옮겨 규정할 수 있는 총론적 사항을 통합법에 포함시키되, 「과학기술기본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제외시키는 방안
- 2안 : 통합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통합법에 규정할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의 작용법적 규정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방안

- 검토 : 「과학기술기본법」은 다수 부처에 산재된 과학기술 관련 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성격의 법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속성이 강한 기초 및 원천연구에만 적용할 사항을 함께 규정할 경우 기초 원천연구진흥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1안을 채택하도록 함

※ 유사 법률의 통합은 법제처가 수립한 방침에도 부합하지만 지나친 통합은 오히려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정책추진의 취지가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음

○ 연구방향

- 통합법안 초안 마련 후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을 거쳐 초안 보완

- 통합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성안

※ 동법은 1972년말 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을 이어받아 2011년 제정된 법률로서,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동법은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한 법률)과 함께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법과 작용법의 양대 기반을 이루었음

□ 1안에 따른 통합대상법률 및 작업방향

○ 미래부 소관 분야별 작용법을 통합

※ 과업상의 대상 법률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생명공학육성법」
- 「뇌연구촉진법」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법률명	입법목적	구성체계
나노기술 개발촉진법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장 구분 없음 목적, 정의, 기본시책의 마련,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의 추진,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민간기술개발의 지원,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시설등의 확충, 연구개발의 실용화,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나노기술관련 비영리법인등의 육성, 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영향평가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국가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관리등 : 생명연구자원관리의 기본원칙, 기본시책의 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등,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등, 기탁 및 등록등,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등,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등, 지정의 취소등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분야의 육성 : 관련기관의 육성·지원, 투자재원의 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공동연구의 지

법률명	입법목적	구성체계
		<p>원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통계간행물의 발간등 제4장 보칙 : 청문, 위임 및 위탁</p>
<p>생명공학 육성법</p>	<p>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p>	<p>※ 장 구분 없음 목적, 정의, 적용범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등,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연구 및 기술협력, 공동연구의 촉진,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생명공학육성시책 강구등, 검정 및 임상, 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p>
<p>뇌연구 촉진법</p>	<p>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p>	<p>※ 장 구분 없음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정부등의 책무,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뇌연구투자의 확대, 연구 및 기술협력,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관계산업체 지원,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뇌연구추진시책의 마련, 임상 및 검정, 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연구소의 설립</p>
<p>국가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p>	<p>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p>	<p>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발전 추진체제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p>

법률명	입법목적	구성체계
	<p>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p>	<p>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p> <p>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전문인력의 양성, 첨단연구망의 구축·유지·활용·개선,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활동조사</p> <p>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산업체에 대한 지원, 국제협력,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촉진</p>

-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의 연계성 검토
- 각종 국책 연구원 등 기초 원천연구 담당 기관의 육성 및 기능에 관한 법률도 분석
- 유관부처 소관 관련 작용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통합법 마련
  - 이들 법률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이더라도 각 부처 소관사항과 밀접한 분야는 각 부처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이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및 새로 제정할 통합법의 내용과 상충될 수 있는 사항이 혼재할 경우 체계정합성을 저해하므로 이

- 러한 요소들을 발굴하여 통합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
- 아울러 이들 타 부처 소관 과학기술 관련 법률에 특유한 진흥 시책이 있을 경우 통합법에도 유사한 조항을 두도록 함
  - 연구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사업화 등 전주기로 확대되는 R&D 역할의 변화에 따라 분야별 법제를 포괄함과 아울러 산업 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관련법률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도 병행(특히 생명과학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과도 밀접한 관련)

※ 주요검토 법률

소관부처	법률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li> <li>- 총칙, 국가 및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인간대상 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인간존엄 및 정체성 보호, 배아생성의료기관, 잔여배아연구 등), 인체유래물 연구, 유전자 치료 및 검사, 감독, 보칙 및 벌칙</li> </ul>
보건복지부 미래창조 과학부 산업통상 자원부	첨단의료복합 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li> <li>- 총칙, 첨단복합의료단지의 조성, 입주기관 등</li> </ul>

소관부처	법률명	주요내용
		에 대한 지원, 규제특례, 단지위원회, 보칙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물과학의 육성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li> <li>-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국제협력, 공동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관련산업체 지원, 연구개발정보 수집 보급, 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관련 전문기관 단체 지정 활용, 조세감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준용</li> </ul>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li> <li>- 총칙, 보건의료기술진흥시책(기술개발 보호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추진, 정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지정, 분류체계 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보건신기술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인증취소,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협동연구의 촉진, 산업재산권 사용특례, 감독, 기술료 징수 사용),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한국보건의료원, 보칙</li> </ul>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정</li> </ul>

소관부처	법률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칙, 희귀질환 관리(관리체계, 관리사업, 전문기관, 의약품 개발지원) 보칙</li> </ul>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 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li> <li>- 총칙, 제약산업육성지원계획,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약기업의 연구개발</li> </ul>
식품의약품 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제정</li> <li>- 총칙,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의 공급, 안전관리, 기록 및 정보 공개, 보칙</li> </ul>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제정</li> <li>- 총칙,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이용,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 체계적 보존 관리 이용 기반구축, 보칙 및 벌칙</li> </ul>
해양수산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li> </ul>

소관부처	법률명	주요내용
	법률	<p>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칙, 종합계획 등, 책임기관 지정 운영, 인프라 구축, 보칙 및 벌칙</li> </ul>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정</li> <li>- 총칙, 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국제산업기술협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촉진기금, 유관기관, 보칙 및 벌칙</li> </ul>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하기 위하여 제정</li> <li>- 총칙, 산업교육진흥, 국가와 지자체 부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보칙</li> </ul>

○ 통합법안의 주요 내용 도표

<(가칭)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 제정안 >

□ 2안에 따른 통합대상법률 및 작업방향

	기초	나노	바이오 (생자/생공/ 뇌)	컴	드론	비고
<b>제 1 장 총칙</b>						
제 1 조(목적)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제 2 조(정의)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 제3조		생자 제4조 생공 제3조 뇌 제3조	컴 제4조	드론 제3조	
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기초 제4조	나노 제3조	생자 제3조 뇌 제4조	컴 제3조		
<b>제 2 장 진흥시책의 추진체계</b>						
<b>제 1 절 계획 및 사업</b>						
제 5 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기초 제5조	나노 제4조	생자 제7조 생공 제4조 뇌 제5조	컴 제5조	드론 제4조	
제 6 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컴 제15조	드론 제14조 제15조	전체 확대
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기초 제5조	나노 제5조	생자 제7조 생공 제5조 뇌 제6조	컴 제6조	드론 제5조	
제 8 조(기초연구 등 사업의 추진)	기초 제6조	나노 제6조			드론 제8조	
<b>제 2 절 관련 기구 등</b>						
제 9 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기초 제9조					
제10조(중점육성분야 정책 심의회)		나노 제7조	생공 제6조 뇌 제6조의2	컴 제7조	드론 제6조	시행령 위임

	기초	나노	바이오 (생자/생공/ 뇌)	컴	드론	비고
제11조(중점육성분야 전문 연구소의 설립 및 지정)		나노 제13조	생공 제16조 제17조 뇌 제17조	컴 제9조		시행령 위임
제12조(기초연구 등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나노 제17조				전체 확대
제13조(생명연구자원 기탁 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생자 제8조 생자 제9조			
제14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생자제10조			
제15조(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의 지정 등)			생자 제11조 생자 제12조			
<b>제3절 부처간 업무분담</b>						
제16조(중점육성분야에 관한 관계부처간 업무분담)			생자 제5조 생자 제6조 생공 제13조 뇌 제14조	컴 제8조		대통령령 위임
<b>제 3 장 기초연구 등 기반구축</b>						
제17조(투자의 확대)			생자 제14조 뇌 제9조	컴 제10조		전체 확대
제18조(대학의 기초연구 등 환경 조성)	기초 제7조 제8조					전체 확대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나노 제10조	생자 제15조	컴 제12조	드론 제10조	
제20조(연구시설의 확충)		나노 제11조		컴 제11조 제13조	드론 제11조	전체 확대

	기초	나노	바이오 (생자/생공/ 뇌)	컴	드론	비고
제21조(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촉진)	기초 제10조					전체 확대
제22조(민간 등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조사)		나노 제8조 나노 제9조	생자 제13조			전체 확대
제23조(학술단체활동지원)	기초 제11조		뇌 제11조			전체 확대
제24조(공동연구지원)			생자 제16조 생공 제10조 뇌 제11조	컴 제16조 제17조	드론 제9조	
제25조(공공기관 등 연구비 지원)	기초 제13조					전체 확대
제26조(국제협력)	기초 제12조		생자 제16조 생공 제9조 뇌 제10조	컴 제19조	드론 제13조	
제27조(기술정보체계 구축)		나노 제14조	생자 제18조② 생공 제12조 뇌 제13조	컴 제14조		
제28조(표준화 및 측정표준 체계의 확립)		나노 제15조	생자 제18조			전체 확대
제29조(기술영향평가)		나노 제19조				전체 확대
제30조(연구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생공 제15조			뇌 포함

	기초	나노	바이오 (생자/생공/ 뇌)	컴	드론	비고
제31조(생명연구자원 등에 관한 통계간행물 등의 발 간)			생자 제19조			전체 확대
제32조(조세감면 등)		나노 제18조	생공 제19조②			전체 확대
<b>제 4 장 기초연구 등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b>						
제33조(연구개발 결과의 활 용 촉진 및 실용화)		나노 제12조	생공 제11조	컴 제20조 제21조		전체 확대
제34조(산업화 및 창업 등 지원)			생공 제11조 뇌 제12조	컴 제18조	드론 제12조	
제35조(중점육성분야 기술연 구단지의 조성)		나노 제16조	생공 제11조			중점 전체 확대
제36조(임상 및 검정)			생공 제14조 뇌 제15조			
제37조(산업화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등)			생공 제15조 뇌 제16조			
제38조(생명연구자원의 활 용)			생자 제17조			
<b>제 5 장 보칙</b>						
제39조(청문)			생자 제20조			
제40조(권한의 위탁)	기초 제20조		생자 제21조			
제41조(감독명령 등)	기초 제20의 2					

	기초	나노	바이오 (생자/생공/ 뇌)	컴	드론	비고
제42조(비밀유지의무)					드론 제16조	
제43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기초 제20의 3				드론 제17조	
<b>제 6 장 벌칙</b>						
제44조(과태료)	기초 제21조				드론 제18조	
<b>부 칙</b>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3조(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법령에 대한 적용)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기  
본법」 등과 중복성 등에 따라 삭제 검토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에서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자체연구의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에서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
  - ①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③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

① 연구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②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③ 진흥기금에의 산입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②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기술혁신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과 중복성 및 실효성 등에 따라 삭제 검토

- 산업기술혁신법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등은 반드시 법률상 명시적인 조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와 과학기술기본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중

복성이 문제됨

-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중복성이 문제됨
- 산업기술혁신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와 과학기술기본법의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과 중복성이 문제됨
- 산업기술혁신법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는 다른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등)에서 이미 관련 조항을 두고 있어서 별도의 조항으로 둘 필요성이 낮아 삭제
- 산업기술혁신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중복성이 문제됨
-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는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만 한정하여 규제의 적합성이 문제됨
-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문제됨
- 산업기술혁신법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는 시장에 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산업기술혁신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으로 별도의 설립보다는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하위 규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 대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등을 삭제하고 시행령 등으로 내리는 방안 검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하위 규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 대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6조(정관),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제30조(사업연도), 제31조(수입), 제32조(지출),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33조(회계원칙 등),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제39조의2(산학협력 통계의 작성)을 삭제하고 시행령 등으로 내리는 방안 검토
  
- 통합법안의 주요 내용 도표

<(가칭)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 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 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제 2 조(정의)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b>제 2 장 기술개발의 지원</b>					
제 4 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		
제 5 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				
제 6 조(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제14조의 2				
제 7 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 소)	제14조의 3				
제 8 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 항)	제14조의 4				
제 9 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 연)	제15조				
제10조(기술개발지원)	제16조				
제11조(사후관리)	제19조				
<b>제 3 장 기술혁신의 촉진</b>					
제 1 절 기술혁신의 촉진 지원					
제12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 무)		제3조			
제13조(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 충)		제7조			
제 2 절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기 술 등의 인증					
제14조(기술개발사업)		제11조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제1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			
제17조(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3조의			
제18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 용제품 확인)		제15조의 2			
제19조(신제품의 인증)		제16조			
제20조(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		제16조의 2			
제21조(인증표시)		제16조의 3			
제22조(인증의 사후관리)		제16조의 4			
제23조(인증의 취소)		제16조의 5			
제 3 절 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24조(기술기반조성사업)		제19조			
제25조(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			
제26조(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 2			
제27조(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0조의 3			
제28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제21조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 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및 활용촉진)					
제29조(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제22조			
제30조(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제23조			
제31조(기술의 표준화)		제24조			
제32조(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제25조			
제33조(기술저변의 확충)		제26조			
제34조(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26조의 2			
제 4 절 국제기술협력					
제35조(국제기술협력사업)		제27조			
제36조(남북한 기술협력의 촉진)		제28조			
제36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29조			
제37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30조			
제38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31조			
제39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32조			
제 5 절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촉진					
제40조(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41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제33조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 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제42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34조			
제43조(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제34조의 2			
제44조(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35조			
제45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6조			
제46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			
제47조(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제37조의 2			
제 6 절 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8조(한국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38조			
제49조(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제39조의 2			
제5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제40조			
제51조(한국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1조			
제5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2조			
제53조(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 규정 준수)		제43조			
<b>제 4 장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b>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 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제 1 절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54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7조		
제55조(실태조사)			제8조		
제5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 소 및 지원)			제10조		
제57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제11조		
제58조(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		
제59조(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2		
제60조(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 보)			제12조의3		
제61조(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의 양성 및 지원)			제13조		
제62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제14조		
제2절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					
제63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의 추진)			제15조		
제64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의 수행기관)			제15조의2		
제65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 진)			제16조		
제6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			제17조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고
· 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67조(기술보호·육성사업의 실시)			제18조		
제68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제19조		
제69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제20조		
제70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71조(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1조의2		
제7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3		
제73조(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4		
제74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1조의5		
제75조(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제21조의6		
제76조(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제21조의7		
제77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2조		
제78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		
제79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제24조		
제80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25조		
제 3 절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제81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26조		
제82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7조		
제83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		
제84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29조		
제8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0조		
제86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1조		
제 4 절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87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제32조		
제88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5조		
제 5 절 기술신탁관리업					
제89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2		
제90조(신탁사무의 방법)			제35조의3		
제91조(신탁사무의 위탁)			제35조의4		
제92조(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제35조의5		
제93조(감독)			제35조의6		
제94조(허가취소 등)			제35조의7		
제95조(과징금처분)			제35조의8		
제 5 장 기술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 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b>촉진</b>					
제 1 절 기술교육의 진흥					
제96조(단기 기술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	
제9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제7조	
제9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의 설치·운영)				제8조	
제99조(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8조의2	
제100조(보고·검사 등)				제8조의3	
제101조(기술자문 등)				제9조	
제102조(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제10조	
제103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제11조	
제104조(기술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제12조	
제105조(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제12조의2	
제106조(신기기 등의 공급)				제13조	
제107조(기술교육센터 설치 등)				제13조의2	
제 2 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0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 등의 부담)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 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제109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제110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제111조(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제22조의 2	
제112조(장학금의 지급)				제23조	
제 3 절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13조(산학연협력계약)				제24조	
제114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제25조	
제115조(학교기업)				제36조	
제116조(협력연구소)				제37조	
제117조(인력의 공동활용)				제37조의 2	
제118조(파견)				제37조의 3	
제119조(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7조의 4	
제120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제38조	
제121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39조	
제122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38조의 2	

	기초법	기술 혁신법	기술이전·사업화법	산업 교육법	비 고
<b>제 6 장 보칙 및 벌칙</b>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	제44조	제39조	제43조	
제1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	제20조의 3	제45조	제40조	제44조	
제125조(비밀유지)		제46조	제38조	제45조	
제126조(벌칙)		제47조	제41조	제46조	
제127조(벌칙)					
제128조(양벌규정)		제48조	제42조		
제129조(과태료)	제21조	제49조			
<b>부 칙</b>					
제 1 조(시행일)					
제 2 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 3 조(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법령에 대한 적용)					

□ 소결

○ 통합법안 제정에 관련 의견 수렴

- 통합법안의 작성 방향과 주요 통폐합 대상의 법령을 선정은 연구진에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전문가 및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

여 마련하였음

※ 다만, 이 연구의 통합법안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통폐합 사항은 연구진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였음

○ 통합법안 제정에 관련 의미와 미래 사회

-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함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및 기술개발 관련 분야의 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수립 및 집행과 국가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융·복합연구와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통합법안의 마련은 4차 산업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임
- 통합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무자의견 수렴 및 기존의 정부정책수립자(공무원, 연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정책입안자는 찬성하나 일부 실무자(개별법에서 상세한 정책적 내용을 담고자 해당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인 부서담당자)에서는 반대 의견도 제시되었고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의 연구자 등은 대체적으로 통합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4.2.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의 제정방안

## 4.2.1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의 입법목적

### □ 해설

- 종전에 기초연구진흥을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운영해 왔으며, 기초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천기술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진흥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 촉진법」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왔음
  - 그밖에 최근에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이 입법추진 중에 있는데, 이들 법률은 서로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각각 별도의 종합계획 내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의 중복이 많았으며 분야별로 종합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부족하였음
-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안의 입법목적은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를 진흥·지원·육성하고 나노기술, 바이오분야 등 기본육성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함과 아울러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등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통합법안의 작성과 통합대상 법령은 위에서도 밝혀듯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융·복합 및 유연성 등을 높이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강화하고자 함

-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활용촉진에 관하여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적조항에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던바, 기초연구의 경우에도 사업화 등 활용촉진이 연구개발의욕을 북돋우는데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고 목적조항에 명시하도록 함

□ 제정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를 진흥·지원·육성하고 기본육성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함과 아울러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등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

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뇌연구 촉진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2.2. 중요용어의 정의

##### □ 해설

- 종전의 기초연구진흥을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 촉진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에 있어 용어 정의는 이들 법률에 규정된 것을 이어받아 규정하되, 각 분야별 연구는 “기본육성분야”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빈도가 낮은 용어는 해당 첫 조항에서 약칭으로 대체하며, 이 법안에서 새로 추가한 원천연구의 개념과 기초연구, 원천연구 및 기본육성분야를 망라하는 표현으로서 “기초연구 등”이란 용어를 새로 규정함

<참조>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의 정의<sup>20)</sup>

##### ○ 기초연구의 정의

20) 기초·원천연구와 관련한 개념정의는 다양한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위에서 인용한 문헌 이외에도 자세한 논의는 정미애 외4인,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 산학연협력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p.23~25; 김용정, 기초연구성과의 확산·활용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성과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p7~10; 권옥현외 6인, 연구개발 단계별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기초연구에서 개발까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0. p3~8; 김미정·이흥권, 기초연구의 정책운영체계 개선 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p3~7; 도계훈외,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원천연구 비중 산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p9~19. 참조.

- 과학연구진흥법('89년 제정)은 기초과학연구를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기초연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08)<sup>21)</sup>는 기초연구를 “특정한 응용 또는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주로 행하여지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로 정의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보고서(2009)는 기초연구를 “특수한 응용 또는 사용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로 정의하였음
-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2007)은 OECD Frascati Manual을 준용하여 기초연구를 “자연현상의 원리 규명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획득하는 연구(순수 기초연구)”와 “미래의 광범위한 응용을 위하여 원천지식의 토대를 산출하는 연구(지향형 기초연구)”로 구분하였음

○ 원천연구의 정의

---

21) 교육과학기술부, 200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8, p9~10.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천연구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초과학기술위원회는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방안 (2008. 7. 22)에서 원천연구를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비를 생산하거나, 새로운 공정, 시스템 및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체계적인 연구활동”으로 정의하였음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전 원천 연구개념 및 비중 산정(2009. 7. 28)에서 원천연구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하였음

□ 제정안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2. “원천연구”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3. “기본육성분야”란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분야를 말한다.

가. 나노기술 :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및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나. 생명연구자원 :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

다. 생명공학 :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및 기초의과학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뇌연구 : 다음의 어느 하나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

1) 뇌과학(腦科學) :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

2) 뇌의약학(腦醫藥學) :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

3) 뇌공학(腦工學) :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

마. 국가초고성능컴퓨팅 :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국방·교육·사회·문화·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및 활용

바. 무인이동체 :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에 의하여 이동하는 장치로서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농기계, 무인자율잠수정 등

4. “기초연구 등”이란 기초연구·원천연구 및 기본육성분야를 말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을 말한다.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2. “나노팸”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

시설을 말한다.

- 뇌연구 촉진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 2.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한다.
  - 3. “뇌의약학”이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 4. “뇌공학”이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를 말한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생명공학육성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1.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2.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하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이라 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 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국방·교육·사회·문화·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3.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기술·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네트워크기반·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첨단연구망”이란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써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초고성능컴퓨터: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
  - 나. 초고성능컴퓨팅 첨단연구망: 초고성능컴퓨터 등과 연계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로 대용량 데이터를 생산·처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 및 장비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술: 유형 자원을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나. 소프트웨어: 유형 자원의 구축·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 정보: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정보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운영·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무인이동체”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에 의하여 이동하는 장치로서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농기계, 무인자율잠수정 등을 말한다.

#### 4.2.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해설

- 이 법은 종전의 각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냄

－ 진흥법은 진흥시책에 관하여 규정하므로 다른 법률과 저촉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다른 법률에 규정된 진흥시책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진흥에 도움이 되므로 일반법으로 규정함이 통상적임

- 이 법은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하여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법에서 주로 다루는 기초연구 등에 대한 연구의 진흥·지원·육성과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에 관하여는 이 법이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임
- 일부 입법례는 적용범위라는 제명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더 정확한 표현임
- 제정안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 등에 대한 연구의 진흥·지원·육성과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뇌연구 촉진법 제 3 조(적용 범위) 뇌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 3 조(적용범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인이동체의 연구개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2.4. 국가 등의 책무

##### □ 해설

- 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진흥시책 추진의 지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이를 명시함
- 아울러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와 기본육성분야를 실제 담당하는 연구기관들의 협력의무도 중요하므로 이를 규정함(대상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정의도 있지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제정안

**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구 등에 대한 연구의 진흥·지원·육성을 통한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이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연구개발된 기술을 관리·이용하는 자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 6 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

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 3 조(기본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財源)을 확대하고, 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뇌연구 촉진법 제 4 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를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 3 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 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이용하는 자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 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2.5.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해설

-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계획 외에 기본육성분야에 관한 각 개별법에서도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번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 계획의 수립절차도 상이하어 혼선을 빚음과 아울러 분야별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통일하도록 함
- 다만 기본육성분야의 경우에는 종전부터 개별법률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분야별 세부계획은 각 부처 소관 사항별로 각 부처에서 수립한 계획을 통합하고, 이 법안에서 종전의 여러 개별적 심의기구를 통합하여 설치한 기본육성분야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 수립절차는 지나치게 번잡하지 않도록 종전의 개별법률에서 정한 각종 기구의 심의 등을 생략하고(필요한 경우 하위법령에서 분야별 심의절차를 보완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만을 받도록 하며, 특히 재원확보의 경우에는 안 제17조제2항에서 따로 규정하도록 함

□ 제정안

**제 5 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초원천연구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 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 등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등과의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 등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 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에는 기본육성분야의 각 분야별로 세분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분야별 세부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야별 세부계획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른 기본육성분야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5 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 4 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

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촉진
4. 나노기술 관련 인력·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6.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추세 및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뇌연구 촉진법 제 5 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

양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조정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자원(投資財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
3. 교육, 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4.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保全)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7 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 4 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5 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배분·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투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 4 조(무인이동체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2.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에 관한 사항
  6.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무인이동체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이동체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6.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해설

- 실효성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다수의 관련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에서만 실태조사

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조문이 있어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함. 다만,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한 무인이동체의 수요와 기술사양을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실태조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함

□ 제정안

**제 6 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초연구 등 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초고성능 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14조(무인이동체의 공공수요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 1회 이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한 무인이동체의 수요와 기술사양을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서 조사된 공공수요 및 기술사양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이동체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무인이동체 및 관련 분야 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이동체 관련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4.2.7.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해설

- 5년을 주기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근거를 마련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에서는 종합계획과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였지만 체계상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함

제정안

**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5 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 ② (생략)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 5 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뇌연구 촉진법 제 6 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7 조(생명연

- 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④ (생략)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 5 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6 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 5 조(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8. 기초연구 등 사업의 추진

##### □ 해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이어 받아 기초연구 등의 주된 사업추진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연구를 추진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과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에 규정된 기술지도의 작성이나 협약에 관한 상세규정과 업계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 제정안

제 8 조(기초연구 등 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

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등에게 기초연구 등의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연구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 등 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 6 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제적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에 관한 개발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나노기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 8 조(무인이동체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의 전략수립 및 투자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이동체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

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9.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해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과 기술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석학으로 회원을 구성하여 각 부문별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의 진흥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권위 있는 학술기구로서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지고 학술조사, 연구활동,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평가 및 자문에 대한 독립성·자율성을 바탕으로 순수 민간 아카데미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 및 외국 과학 아카데미와의 학술교류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종전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근거규정을 둔 사례에 따라 통합법의 유사기관 설립 및 설치근거규정의 처음에 배치하도록 함
- 조직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칙규정 등은 불필요함

제정안

**제 9 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

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 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10. 기본육성분야 정책심의회 설치

□ 해설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 뇌연구 촉진법 제6조의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및 협의회와 그 하위의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구 간소화

- 각 분야별 위원 위촉대상이 상이할 것에 대비하여 위원수를 5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의회의 위원 위촉과 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서는 기본육성분야의 각 분야별로 위촉 및 회의개최 등을 할 수 있게 함
-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제정안

**제10조(기본육성분야 정책심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육성분야와 관련된 중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기본육성분야와 관련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기본육성분야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본육성분야와 관련된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진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기본육성분야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기본육성분야 관련 연구인력 및 산업기술인력의 인력개발과 인력교류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기본육성분야 투자확대계획 등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5. 기본육성분야 연구자원의 이용과 보전, 도입과 배분을 위한 연구 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6. 기본육성분야 첨단연구망의 유지·보수·활용에 관한 사항
  7. 기본육성분야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8. 기본육성분야와 관련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시설의 공동활용,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에 관한 사항
  9. 기본육성분야와 관련된 공공수요의 발굴 및 보급,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본육성분야 진흥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기본육성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⑥ 심의회의 민간인 위원의 위촉과 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기본육성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 ⑦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 7 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뇌연구 촉진법 제 6 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 6 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조정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조정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조정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조정

5.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8. 뇌연구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7 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

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6. 첨단연구망의 유지·보수·활용에 관한 사항
7.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 6 조(무인이동체연구개발심의 위원회) ① 무인이동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무인이동체연구개발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무인이동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인이동체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와 무인이동체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무인이동체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무인이동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추진 실적 평가
5. 무인이동체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무인이동체 공공수요 발굴 및 보급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4.2.11. 기본육성분야 전문연구소의 설립 및 지정

##### □ 해설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3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 지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제17조(기초의 과학육성지원기구), 뇌연구 촉진법 제17조(연구소의 설립),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등 기본육성분야의 각종 연구소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조항을 하나로 묶어 규정하고 공통된 사항은 일률적으로 규정함
- 이들 기관들은 현재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들이

므로 임의로 통폐합은 유보하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법인의 설립이나 연구기구의 지정은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하위 시행령에서는 목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만을 정할 수 있어 더 이상의 조문 간소화는 곤란

#### □ 제정안

**제11조(기본육성분야 전문연구소의 설립 및 지정)** ① 생명공학연구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구원 및 제2항의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연구원 및 제2항의 연구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

능컴퓨팅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또는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⑩ 정부는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⑪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3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

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뇌연구 촉진법 제17조(연구소의 설립) ①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 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③ 삭제

제17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 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9 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2.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4.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5.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6.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7.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8.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9.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10.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11.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

퓨팅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2.12. 기초연구 등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 해설

- 비영리법인은 공공기관과 달리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 육성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에서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하였지만 이를 기초연구 등 전체로 확대
- 오늘날 각종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어 각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추세에 비추어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와 기본육성분야에서도 비영리법인의 조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제12조(기초연구 등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13.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해설

- 생명연구자원 관련 사항은 통합대상 법률 중 특이한 사항으로서 기탁등록보존제도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옮겨 규정
- 다만 통합법에서 다른 조문과의 균형 등을 위하여 3개 조문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문에 규정

- ※ 종전부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들 법률은 해양수산부의 독립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재편성되어 시행예정으로 있음)이 별도로 제정되어 왔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규정되어 있지만 별도 법률들은 소관부처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통합대상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함(안 제16조제2항과도 관련)

#### □ 제정안

- 제13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2. 생명연구자원의 보존과 관리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4. 소관 정보시스템,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복수의 시설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생명연구자원을 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할 수 있다.
- ⑥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정부는 제6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9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제8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8 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2. 생명연구자원의 보존과 관리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4. 소관 정보시스템,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복수의 시설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9 조(기탁 및 등록 등) ① 생명연구자원을 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할 수 있다.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 보존기관, 책임기관 또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5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4.2.14.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해설

- 생명연구자원 관련 사항은 통합대상 법률 중 특이한 사항으로서 책임기관 및 생명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옮겨 규정
- 다만 통합법에서 다른 조문과의 균형 등을 위하여 조문간 통합

제정안

**제14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2.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그 밖에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 또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⑥ 책임기관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2.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그 밖에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책임기관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 보존기관, 책임기관 또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5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

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15.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 □ 해설

- 생명연구자원 관련 사항은 통합대상 법률 중 특이한 사항으로서 국가생명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옮겨 규정
- 다만 통합법에서 다른 조문과의 균형 등을 위하여 조문간 통합

##### □ 제정안

**제15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

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 관리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관리 지원 및 교육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정보관리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 관리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관리 지원 및 교육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정보관리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16. 기본육성분야에 관한 관계부처간 업무분담

□ 해설

- 과학기술 관련업무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업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괄 조정을 담당하면서도 기본육성분야에 관하여서는 주무부처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들 분야에서도 여러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를 각 개별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음
- 그러나 부처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굳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도 될 사항이므로 대통령에 위임근거를 두도록 함
- 다만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는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다수 부처에서 업무에 관여되어 있지만 이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관하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내용을 옮겨 규정함

□ 제정안

**제16조(기본육성분야에 관한 관계부처간 업무분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뇌연구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처간에 업무를 분담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뇌연구 촉진법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제 6 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

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 4의2. 삭제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 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을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물 이용을 위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 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

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4.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6.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 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9.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10. 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 4.2.17. 투자의 확대

□ 해설

-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확보하는 것이 연구진흥의 관건이 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각 개별법률에도 투자 확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뇌연구 촉진법의 입법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기초연구 등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초연구 등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예산의 배분·조정에서 있어 보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함
- 뇌연구 촉진법에서는 생명연구정책종합심의회 심의와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배분에 관한 실질적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와 심의회의 보고 존중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임(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절차와 연계하여 검토-종합계획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데, 투자재원 확대는 매년 보고하는 방안)
- ※ 현재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후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임
- ※ 연구개발에서 재정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므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연구개발예산만큼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절차와 달리 대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기관에서 재정편성을 하며 일본은 수상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재정편성도 다루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제정안

**제17조(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제5조제2항제4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연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초연구 등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산의 배분·조정에 있어 보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뇌연구 촉진법 제 9 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뇌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투자자원의 마련)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2.18. 대학의 기초연구 등 환경 조성

##### □ 해설

- 기초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에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을 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기초연구진흥정책으로 열거한 사항들은 대부분 대학에 대한 조치내용이므로 같은 법 제8조를 모델로 하되 제7조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

##### □ 제정안

**제18조(대학의 기초연구 등 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2.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3.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4.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5.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6.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7.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8.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등 지원 촉진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7 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4.2.19. 전문인력의 양성

해설

- 전문인력의 양성은 진흥법의 가장 기본적 요소임에도 기본육성 분야 개별법 몇 개의 조항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연구 등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함
- 전문인력의 양성을 담당할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마련이 핵심이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사례를 기본모델로 하여 규정

제정안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 촉진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등 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 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초연구 등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나노기술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10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인이동체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인이동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무인이동체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무인이동체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4.2.20. 연구시설의 확충

- 해설
- 기초연구 등에 필요한 연구시설에 관한 규정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을 모델로 하여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
- 특히 나노팸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팸센터의 구축도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
- 제정안

- 제20조(연구시설의 확충)**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첨단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고 첨단 연구망의 구축·유지·활용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기초연구 등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등 팹(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센터를 구축·운영한다.
- ③ 정부는 팹센터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실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 2 조(정의)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한다.
- ③ 정부는 나노팹센터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 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선진국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첨단연구망의 구축·유지·활용·개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유지·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11조(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시설 확충) 정부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

#### 4.2.21. 연구 시설 장비 공동활용 촉진

□ 해설

- 기초연구 등에 소요되는 고가의 시설 및 장비를 공동활용하도록 하는 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기본육성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분야로 확대하여 규정

□ 제정안

**제21조(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8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등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2.22. 민간 등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조사 등

□ 해설

- 민간분야에서 기초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려시책을 규정하고 필요한 조사기능을 규정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규정을 기초연구 등 전분야로 확대하고

생명연구자원관리 분야의 특유한 제6항은 따로 규정

□ 제정안

**제22조(민간 등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조사 등)**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초연구 등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초연구 등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기초연구 등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민간 부문의 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 8 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9 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4.2.23. 학술단체활동지원

해설

- 기초연구 등은 학술활동에 의하여 큰 진전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학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모델로 하여 기초연구 등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

제정안

**제23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뇌연구 촉진법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

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4.2.24. 공동연구 지원

해설

- 기초연구 등 분야에서도 중복투자 방지와 연구성과의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공동연구가 긴요한 바 현재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통합하여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고가장비인 초고성능컴퓨터와 컴퓨팅 자원을 공동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 함께 규정

제정안

**제24조(공동연구지원)**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뇌연구 촉진법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생명공학육성법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동연구 개발의 촉진)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 9 조(무인이동체 연구개발 협동연구) 정부는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2.25. 공공기관 등 연구비 지원

해설

- 공공기관의 역할과 비중도 기초연구 등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공

공기관도 기초연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기초연구 등 전 분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 권고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와 협의하고 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규모를 정하도록 함

제정안

**제25조(공공기관 등 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등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4.2.26. 국제협력

##### □ 해설

-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국제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연구인력을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 뇌연구 촉진법 등 여러 개별법률에서도 국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장 간명하면서 포괄적인 규정을 모델로 함
- 전문인력의 파견이나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등은 안 제19조와 중복되지만 규정 관점이 다르므로 각각 규정/국제협력이란 조 제목으로 규정하고 국내공동연구는 학술단체활동지원과 합쳐서 별도 조문화할 수도 있을 것임

##### □ 제정안

**제26조(국제협력)**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 등에 관한 공동사업, 선진기술의 도입, 전문인력의 파견,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뇌연구 촉진법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① (생략)  
②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 9 조(연구 및 기술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제협력)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13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

부는 무인이동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전문 인력, 정보 등의 교류
3. 국제 전시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개최
4.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시행 및 참여
5. 정부 간 국제기구 등의 규범화 작업에 참여
6.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2.27. 기술정보체계 구축

해설

- 연구개발에서 정보체계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기초연구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보체계구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규정을 전 분야로 확대

제정안

**제27조(기술정보체계 구축)**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관련 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관련 기술 관련 가상현실연구실(假想現實研究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정보 관련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항에 따른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은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를 진흥·지원·육성하고 기본육성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4조(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나노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나노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나노기술 관련 가상현실연구실(假想現實研究室)의 구축 및 운

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뇌연구 촉진법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생명공학육성법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2.28. 표준화 및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 해설
-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여러 입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기초연구 등의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상의 특유제도도 존치

- 제정안

**제28조(표준화 및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기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등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5조(측정표준체계의 확립) 정부는 나노

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4.2.29. 기술영향평가

##### 해설

- 기초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기술개발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반영하는 영향평가가 중요하므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규정을 기초연구 등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

##### 제정안

**제29조(기술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등 기본육성분야에서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4.2.30. 연구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 해설

- 생명공학연구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험지침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생명공학육성법에 규정된 사항은 뇌연구까지를 포함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옮겨 적는 선에서 규정
- 연구실험지침은 연구개발단계는 물론 사업화단계에서도 요구되

므로 후자에 관하여는 안 제37조에서 별도로 규정함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연구개발과 직결되는 중요 법률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로서 부처간 업무이 관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남으므로 동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통합법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음

□ 제정안

**제30조(연구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뇌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를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연구의 연구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4.2.31. 생명연구자원 등에 관한 통계간행물 등의 발간

해설

- 통계간행물의 발간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간할 수 있지만 기초연구 등의 분야에서 관련통계의 간행을 의무화하고 통계청장의 승인 등을 대신하여 협의만 하면 되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이를 존치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기초연구 등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

제정안

**제31조(생명연구자원 등에 관한 통계간행물 등의 발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현황
2. 그 밖에 기본육성분야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은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를 진흥·지원·육성하고 기본육성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③ (생략)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④ 통계청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2.32. 조세감면 등

##### □ 해설

- 연구기자재 및 장비의 수입이 불가피한 기초연구 등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통관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만 규정하였고, 통관절차상의 특례는 생명공학육성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연구 등 전 분야로 확대할 필요
- ※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법률로서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법안에서는 직접적인 조세특례는 규정할 수 없음

##### □ 제정안

**제32조(조세감면 등)** ① 기초연구 등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기초연구 등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8조(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9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삭제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 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

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2.3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및 실용화

##### □ 해설

- 기초연구나 원천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화할 경우 연구의욕을 불러올 수 있으며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인 육성법률에서만 이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기초연구와 원천연구 전반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및 실용화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함
- 각 개별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을 모델로 하여 규정하고 이를 기초연구 등 전 분야로 확대 적용

□ 제정안

**제33조(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기초연구 등에서 얻어진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초연구 등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4.2.34. 산업화 및 창업 등 지원

- 해설
  
- 산업체에서 기초연구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함과 아울러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원 근거를 규정

-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화 및 창업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인 육성법률에서만 이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기초연구와 원천연구 전반을 포함하여 산업화 및 창업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함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모델로 하고 다른 개별법의 유사 조항을 참조하여 규정을 두되 기초연구 등 전분야로 확대하여 규정

□ 제정안

**제34조(산업화 및 창업 등 지원)** ① 정부는 산업체의 기초연구 등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초연구 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뇌연구 촉진법 제12조(관계 산업체 지원) 정부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12조(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4.2.35. 기본육성분야 기술연구단지의 조성

- 해설
- 현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규정된 기술연구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육성분야 전체로 확대하여 규정
-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는 제외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상세한 단지 구성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전체적인 조문 배치와 체계상 단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규정만 두도록 함

□ 제정안

**제35조(기본육성분야 기술연구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기본육성분야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기본육성분야와 관련된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육성분야별로 또는 통합하여 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4.2.36. 임상 및 검정

- 해설
-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체계가 있지만 관련제품의 출시에 대비하여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생명공학육성법과 뇌연구 촉진법에서 옮겨서 규정
- 제정안

**제36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37. 산업화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등

□ 해설

- 현행 뇌연구 촉진법과 생명공학육성법에서는 실험지침에 관하여 연구와 산업화를 한 조문에서 규정하였지만 통합법에서는 연구와 산업화를 별도의 장으로 분류함에 따라 실험지침도 연구단계와 산업화 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입법기술상 준용으로 처리

□ 제정안

제37조(산업화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등) 제30조는 생명공학연구의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경우에 준용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뇌연구 촉진법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시행 등) ① 정부는 뇌 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4.2.38.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해설

-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연구개발 자체에도 활용하게 되므로 산업화에 이용하는 다른 기초연구 등의 경우와 별도로 규정할 필요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옮겨서 규정

제정안

**제38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① 정부는 국민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 국내입법례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① 정부는 국민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4.2.39. 청 문

## □ 해설

- 보칙조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하여 청문을 규정한 조항을 옮겨 규정
- ※ 행정절차법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청문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 인가·허가·면허·등록·승인·지정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조합 등의 설립 취소·해산 명령, 철거·폐쇄 명령, 제조·판매 금지, 자격의 박탈 등과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법제처 법령안입안심사기준)

## □ 제정안

**제3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8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4.2.40. 권한의 위탁

해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된 제반 사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기초연구 등 관련 민간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는 근거를 옮겨 적음
-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하여도 무방한 사항임

제정안

**제4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 등의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2.41. 감독명령 등

□ 해설

- 권한의 위탁에 이어지는 규정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지만 감독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

□ 제정안

**제41조(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수탁 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4.2.42. 비밀유지의무

□ 해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에만 규정이 있지만 기초연구 등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조항이므로 그대로 옮겨 규정해도 무방함

□ 제정안

**제42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국내입법례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16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2.4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설

- 위탁업무 수행시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칙 규정 사항임

제정안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2.44. 과태료

##### 해설

- 행정벌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은 없으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대상만 옮겨 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

##### 제정안

**제44조(과태료)** ① 제4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41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  
수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18조(과태료) ① 제16조의 비  
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외한  
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4.2.45. 시행일

해설

- 하위법령 제정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고려하고 통합법의 시행시기를 굳이 앞당길 필요가 없다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도 무방

제정안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2.46. 다른 법률의 폐지

해설

- 개별법을 통합하므로 이를 각각 폐지하도록 함

제정안

**부칙 제 2 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4. 생명공학육성법
- 5. 뇌연구 촉진법
- 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2.47.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법령에 대한 적용

##### 해설

- 관계법령에서 통합되기 전의 개별법률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 통합법 또는 그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일일이 개정하는 것은 입법낭비이므로 부칙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정안

**부칙 제 3 조(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법령에 대한 적용)**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법률이나 그 법률의 조항을 인용한 법령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4.3.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 4.3.1. 목 적

□ 해설

- 이 통합법에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기술의 혁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
- 이를 통하여 기술개발, 기술이전,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 필요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기술의 혁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술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기술이전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3.2. 정 의

해설

- 이 통합법안에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달리 하거나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

-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사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통합법의 취지와 체계에 맞게 용어 정의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거나 간략하게 정의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혁신”이란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혁신사업”이란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제24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 제35조에 따른 국제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술혁신성과물”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5.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7.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은 제9호에 따른 연구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72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제114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술교육기관”이란 기술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기술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나. 국공립 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마. 제52조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10.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기술이전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9.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 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

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 4.3.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해설

- 통합법은 통합대상의 현행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술개발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기술이전법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4.3.4. 종합계획의 수립 등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개발의 지원 등에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고 정부부처 간에 상호 중복성을 방지하는 등 기술개발지원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현행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계획, 산업기술혁신계획,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통합하되, 시행계획에서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통합법안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2 장 기술개발의 지원

제 4 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기술개발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의 혁신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기술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술개발지원 등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 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5 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혁신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술사·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⑥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기술이전법 제 5 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⑤ 삭제

⑥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5.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현행법처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5 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4.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7.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9.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6.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 해설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을 규정하여 참여기관의 수준과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6 조(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4.3.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 해설

○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인정을 받은 경우 관련 인정 요건 등에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취소 절차 등을 마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7 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

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4.3.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 □ 해설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경우 민간기업에 해당되지만 국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므로 최소한 윤리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8 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3.9.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 해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9 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

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0. 기술개발지원

##### □ 해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②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③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1. 사후관리

해설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참여하고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게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후관

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3.12.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세부적인 정부의 책무 등에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기술혁신에 필요한 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혁신과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계도 책무 등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 3 장 기술혁신의 촉진

#### 제 1 절 기술혁신의 촉진 지원

제12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기술혁신에 필요한 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내부적인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 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3.13. 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공공기관 등에게 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3조(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②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7 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3.14. 기술개발사업

□ 해설

-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①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② 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③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④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등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절차 등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 2 절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기술 등의 인증

제14조(기술개발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 기술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자와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한국기술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4.3.15.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재원을 기금 등으로 귀속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사업 등 결과물의 소유자는 그 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연구지원법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제1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

· 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기술이전법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 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6.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과 별도로 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 등을 규정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2. 제48조에 따른 한국기술진흥원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2.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4.3.17.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 해설

- 통합법안에서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 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7조(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

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8.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8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9. 신제품의 인증

#####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9조(신제품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

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20.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해설

○ 신기술 인증 등에 관련하여 이의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0조(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4.3.21. 인증표시

□ 해설

- 인증된 신제품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

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 관련 표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1조(인증표시) ① 제18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3(인증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22. 인증의 사후관리

해설

-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2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4.3.23. 인증의 취소

□ 해설

-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취소 절차를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3조(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24. 기술기반조성사업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 3 절 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24조(기술기반조성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

관”이라 한다)와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 4.3.25. 기술인력의 양성

##### □ 해설

-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①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②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③ 산학 협력체제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5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제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

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4.3.26. 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① 기술인력의 활용지원 ②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③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6조(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3.27. 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해설

- 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필요에 따라 관련 근거를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7조(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4.3.28.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8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3.29. 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9조(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4.3.30.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 해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0조(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디자인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기술에 관한 정보
2. 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디자인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3.31. 기술의 표준화

해설

- 정부가 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1조(기술의 표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2. 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3. 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3.32.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 해설

○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2조(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3.33. 기술저변의 확충

□ 해설

- 통합법에서는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3조(기술저변의 확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3. 기술의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 2의2. 산업기술의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3.34. 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 □ 해설

- 기술과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과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4조(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과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과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사회

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4.3.35. 국제기술협력사업

□ 해설

-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4 절 국제기술협력

제35조(국제기술협력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제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사업”은 “국제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 4.3.36. 남북한 기술협력의 촉진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남북한 기술협력의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6조(남북한 기술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한 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 령으로 정하는 사업

### 4.3.37.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 해설

- 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7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3.38.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해설
-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8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3.39.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할 수 있도록

## 특 근거를 규정

###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9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3.40.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

- 해설
-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용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 5 절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촉진

제40조(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용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4.3.41.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 □ 해설

-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민간기술지도기관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1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42.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 □ 해설

-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2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3.43.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해설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3조(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44.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 해설

-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중견기업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4조(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중견·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중견기업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5조(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중견·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중견기업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4.3.45.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 해설

- 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45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분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 4.3.46.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해설

-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6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4.3.47. 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해설

- 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련 재원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7에서 규정한 기금 관련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시행령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
- 기금의 용도를 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수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7조(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① 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재원

- 가. 제15조에 따른 기술료
- 나. 정부의 출연금
-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라. 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2. 기금의 용도

- 가.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 나. 기술의 사업화 지원
- 다. 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라. 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

- 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
- 사.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 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 출연
- 자. 기술혁신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차. 일반회계에의 전출
-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2. 정부의 출연금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제37조의6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2.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4.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6.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
7.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  
출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  
출연
9.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  
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0. 일반회계에의 전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37조의6(차입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으로 보전한다.

#### 4.3.48. 한국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 해설

-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그 업무가 협소하고 한국기술진흥원과 업무 중복성이 문제되는 등 기술진흥 및 기술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을 통합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 6 절 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8조(한국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3. 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 3. 기술기반조성사업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5. 기술 전문인력 양성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한다.

- ② 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사업

③ 평가관리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평가관리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4.3.49.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 해설

-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설립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9조(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4.3.50.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 해설

- 공학 및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5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공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산업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공학·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4.3.51. 한국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 해설

-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시험원을 설립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51조(한국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

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 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4.3.52.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해설

- 중소기업·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준 등을 마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5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4.3.53. 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 해설

-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53조(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 4.3.54.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 해설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 4 장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 1 절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54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 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술진흥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제56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제57조에 따른 전담조직
4. 제58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제88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 7 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 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55. 실태조사

□ 해설

-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세부적인 절차 등을 하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55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 8 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56.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을 규정하고, 기술거래기관은 ①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②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③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5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5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해설

-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하되, 독립된 법인으로 하며 정부가 전담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57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

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58. 사업화 전문회사

□ 해설

-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회사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58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4.3.59.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 □ 해설

-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전문회사의 업무로
  - ①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②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③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④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59조(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3.60.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해설

-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0조(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61.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해설

-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1조(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3조(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62.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 해설
-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를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62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

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3.6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 해설

○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2 절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

- 제63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64.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 □ 해설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인 기술진흥원에  
 ①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②기술이전·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③기술에 대한 투자 등 사업을 하도록 규정
-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4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2. 기술이전·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88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6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7. 기술이전·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5.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5조의2(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2. 기술이전·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7. 기술이전·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5.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65. 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 해설

-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5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4.3.66.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 해설

-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 4.3.67. 기술보호·육성사업의 실시

□ 해설

○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7조(기술보호·육성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8조(기술보호·육성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68.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 □ 해설

-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 등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8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73조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69.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 □ 해설

- 민간기술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9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①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①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4.3.70.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 해설

○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0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71. 기술등의 기부채납

#### □ 해설

-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민간기업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1조(기술등의 기부채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 1. 공공연구기관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3. 민간기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7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해설
-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관련 입법 사항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및 기술 교육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 등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 등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 등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 등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4.3.73. 출자회사의 설립 등

□ 해설

-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3조(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72조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 4.3.74.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해설

- 기술지주회사는 ①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②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③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4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등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3.75.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 해설

○ 기술지주회사는 등록 요건 등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5조(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 4.3.76.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 해설

○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6조(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 등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 등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77.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 □ 해설

-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7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

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3.78.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 □ 해설

-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8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88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 4.3.79.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 □ 해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9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

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80.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 □ 해설

-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위규정에서 규정하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0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81.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 해설

- 정부는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3 절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81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4.3.82.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 해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예산 및 기금 등을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填),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2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填)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填)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83.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 □ 해설

-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3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84. 기술이전 · 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 해설

- 기술이전 ·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4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88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29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85. 국유재산의 대부 등

□ 해설

-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대부·양여 및 사용·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양여 및 사용·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양여 및 사용·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99)

4.3.86.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 해설

○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6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4.3.87. 기술평가의 활성화

해설

-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4 절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87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3.88.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 해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8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4.3.89.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허가의 취소 등의 절차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5 절 기술신탁관리업

제89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피성년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9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피성년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

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4.3.90. 신탁사무의 방법

□ 해설

- 통합법안에서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0조(신탁사무의 방법)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 4.3.91. 신탁사무의 위탁

- 해설
- 통합법안에서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1조(신탁사무의 위탁)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 4.3.92.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2조(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4.3.93. 감 독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3조(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5조의6(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4.3.94. 허가취소 등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4조(허가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8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89조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9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3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93조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4.3.95. 과징금처분

□ 해설

-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5조(과징금처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9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이전법 제35조의8(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96.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 5 장 기술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 제 1 절 기술교육의 진흥

제96조(단기 기술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기술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 기술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기술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기술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기술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6 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97. 특별과정의 설치·운영

##### □ 해설

-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술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7 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4.3.98.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 운영

##### □ 해설

○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기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기술교육기관간 또는 기술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②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기술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 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99.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 해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99조(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교육기관이 제9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00. 보고·검사 등

해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0조(보고·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교육기관의 장에게 제9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3(보고·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

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4.3.101. 산업자문 등

##### □ 해설

○ 기술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101조(기술자문 등) ① 기술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 ② 기술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기술교육기관의 장이나 기술교원에게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자문을 요청 받은 기술교육기관의 장과 기술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기술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기술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기술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9 조(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02.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 해설

-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하되,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2조(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① 기술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교육기관에 기술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03. 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3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기술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4.3.104. 기술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4조(기술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기술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3.105. 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 해설

-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기술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기술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5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기술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기술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3.106. 신기기 등의 공급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기술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6조(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기술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기술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기술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기술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기술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기술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기술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07. 기술교육센터 설치 등

□ 해설

- 기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기술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정 취소 등의 사항을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7조(기술교육센터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기술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기술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기술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기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기술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08. 실험·실습시설 설치비 등의 부담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기술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2 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0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 등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1. 기술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
2. 기술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4.3.109.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기술교육기관이 기술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9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기술교육기관이 기술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3.110.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 해설

- 국가는 기술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술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0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기술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11. 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기술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1조(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기술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4.3.112. 장학금의 지급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2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13. 산학협력계약

□ 해설

-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3 절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13조(산학연협력계약) ①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기술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填)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

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학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填)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 4.3.114.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 해설

○ 통합법안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여 필요 이상으로 법률의 복잡화를 해소하고 유연성을 강화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114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에게 귀속한다.
-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⑦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

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4.3.115. 학교기업

##### □ 해설

- 기술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기술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5조(학교기업) ① 기술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기술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기술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기술교육기관 회계(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

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16. 협력연구소

##### □ 해설

-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6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

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

다.

### 4.3.117. 인력의 공동활용

해설

-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인력의 공동활용을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인력의 유연성을 강화하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7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9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118. 파 견

□ 해설

- 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8조(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파견)
  -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4.3.119.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 해설

-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19조(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교육기관은 다른 기술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3.120.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 해설

-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 등은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②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③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④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0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 4.3.121.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1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기술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4.3.122. 학자금 용자계약의 지원

##### □ 해설

- 기술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2조(학자금 용자계약의 지원) 기술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학자금 용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3.123. 수수료

해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신기술 인증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조항을 통합법에서도 규정

제1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 12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 4.3.124. 권한의 위임·위탁

해설

-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은 소속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 6 장 보칙 및 벌칙

제1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기술진흥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산업기술이전법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 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5.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

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4.3.125.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해설

- 정부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책임 강화도록 규정함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5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기술진흥원, 세라믹기술원,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5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산업기술이전법 제40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

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3.126. 비밀유지

##### 해설

- 위탁업무 등을 처리에 따른 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둠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6조(비밀유지) 제12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혁신, 기술이전·사업화촉진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기술이전법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127. 별 칙

□ 해설

- 현행법에서 별칙을 유지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7조(별칙) 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 관련 국내입법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 4.3.128. 벌 칙

해설

현행법에서 벌칙을 유지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 제12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②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3.129. 양벌규정

- 해설
- 현행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 및 제1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기술이전법 제42조(양벌규정) 법인·기관·단체의 대표자나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3.130. 과태료

□ 해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조항을 유지함

제1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관련 국내입법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3제2항(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4.3.131. 부 칙

□ 해설

- 현행법의 폐지에 따른 새로운 제정법 및 관련 조항을 인용하도록 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지
- 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 조(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법령에 대한 적용)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법률이나 그 법률의 조항을 인용한 법령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국내입법례

해당 사항 없음

## 5. 결 론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원천연구는 연구비 투입과 비교하여 그 성과가 낮고 연구사업 추진의 비효율성과 연구관리의 체계화가 미흡하여 연구개발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도 융·복합 및 협동연구가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원천연구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마다 소관 법률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원천연구의 유연성 및 융·복합 연구 등을 저해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의 과학기술정책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유연하게 기초·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있으며, 기초·원천연구 결과물의 혁신 및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등을 막고 있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음
- 일본은 기초·원천연구 관련 총리가 직접 의장이 되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세우고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동원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구조이고, 총리가 직접 관여하기에 계획의 위상과 집행력이 강함
  - \* 일본의 경우 기초·원천연구에 관련한 분산된 형태의 법률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초·원천연구에 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은 기본계획(종합계획)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원천연구 관련 통합법의 제정방안은 「(가칭)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의 제정방안과 「(가칭)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으로 정리
  -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입법사항은 유지하되, 기초·원천연구 관련 통합법의 제정방안에서 중복성 또는 중첩성이 있는 조항(예컨대, 참여제한, 사용료 징수 등)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
  - 「(가칭)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을 통합
  - 「(가칭)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술개발지원’과 「산업기술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

# 부 록

## 【부록 1】 (가칭)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를 진흥·지원·육성하고 중점육성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2. “원천연구”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3. “중점육성분야”란 기초연구 및 원천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분야를 말한다.

가. 나노기술 :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및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나. 생명연구자원 :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써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

다. 생명공학 :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및 기초의과학(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뇌연구 : 다음의 어느 하나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

1) 뇌과학(腦科學) :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

2) 뇌의약학(腦醫藥學) :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

3) 뇌공학(腦工學) :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

마. 국가초고성능컴퓨팅 :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국방·교육·사회·문화·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및 활용

- 바. 무인이동체 :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에 의하여 이동하는 장치로서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농기계, 무인자율잠수정 등
4. “기초연구 등”이란 기초연구·원천연구 및 중점육성분야를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 등에 대한 연구의 진흥·지원·육성과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구 등에 대한 연구의 진흥·지원·육성을 통한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이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연구개발된 기술을 관리·이용하는 자

## 제 2 장 진흥시책의 추진체계

### 제 1 절 계획 및 사업

제 5 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원천연구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 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 등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등과의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 등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 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에는 중점육성분야의 각 분야별로 세분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초연구 등 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기초연구 등 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등에게 기초연구 등의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연구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 등 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 절 관련 기구 등

제 9 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점육성분야 정책심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점육성분야와 관련된 중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중점육성분야와 관련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점육성분야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중점육성분야와 관련된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진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점육성분야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중점육성분야 관련 연구인력 및 산업기술인력의 인력개발과 인력교류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중점육성분야 투자확대계획 등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5. 중점육성분야 연구자원의 이용과 보전, 도입과 배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6. 중점육성분야 첨단연구망의 유지·보수·활용에 관한 사항
7. 중점육성분야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8. 중점육성분야와 관련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시설의 공동활용,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에 관한 사항  
9. 중점육성분야와 관련된 공공수요의 발굴 및 보급,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점육성분야 진흥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중점육성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심의회의 민간인 위원의 위촉과 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중점육성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⑦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점육성분야 전문연구소의 설립 및 지정) ① 생명공학연구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구원 및 제2항의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연구원 및 제2항의 연구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또는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

의를 거쳐야 한다.

⑩ 정부는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⑪ 나노기술전문연구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초연구 등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2. 생명연구자원의 보존과 관리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4. 소관 정보시스템,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복수의 시설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명연구자원을 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할 수 있다.

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정부는 제6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제8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2.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 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그 밖에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 또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책임기관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 관리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 관리 지원 및 교육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정보관리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 절 부처간 업무분담

제16조(중점육성분야에 관한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뇌연구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처간에 업무를 분담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제 3 장 기초연구 등 기반구축

제17조(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제5조제2항제4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연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초연구 등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산의 배분·조정에 있어 보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학의 기초연구 등 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2.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3.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4.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5.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6.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7.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8.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등 지원 촉진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등 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 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초연구 등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시설의 확충)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첨단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고 첨단 연구망의 구축·유지·활용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기초연구 등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등 팹(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센터를 구축·운영한다.

③ 정부는 팹센터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실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8조에 따른 기초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등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 등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조사 등)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초연구 등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초연구 등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기초연구 등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민간 부문의 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공동연구지원)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공기관 등 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등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6조(국제협력)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 등에 관한 공동사업, 선진기술의 도입, 전문인력의 파견,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기술정보체계 구축)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관련 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관련 기술 관련 가상현실연구실(假想現實研究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정보 관련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항에 따른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표준화 및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① 정부는 기초연구 등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기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등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 기술 등 중점육성분야에서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뇌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를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연구의 연구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 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1조(생명연구자원 등에 관한 통계간행물 등의 발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현황
2. 그 밖에 중점육성분야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조세감면 등) ① 기초연구 등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

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기초연구 등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 제 4 장 기초연구 등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제33조(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기초연구 등에서 얻어진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초연구 등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산업화 및 창업 등 지원) ① 정부는 산업체의 기초연구 등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초연구 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중점육성분야 기술연구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중점육성분야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중점육성분야와 관련된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중점육성분야

별로 또는 통합하여 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업화 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등) 제30조는 생명공학연구의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8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① 정부는 국민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3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8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 등의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 6 장 벌 칙

제44조(과태료) ① 제4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41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생명공학육성법
5. 뇌연구 촉진법
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 조(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법령에 대한 적용)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법률이나 그 법률의 조항을 인용한 법령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록 2】 (가칭)기술의 개발지원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기술의 혁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술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혁신”이란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혁신사업”이란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제24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 제35조에 따른 국제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술혁신성과물”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 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5.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7.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은 제9호에 따른 연구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72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제114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술교육기관”이란 기술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기술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나. 국공립 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마. 제52조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10.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술개발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 장 기술개발의 지원

제 4 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기술개발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의 혁신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기술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술개발지원 등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

관

2.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7.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9.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

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 8 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

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9 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등에 관한 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장 기술혁신의 촉진

#### 제 1 절 기술혁신의 촉진 지원

제12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기술혁신에 필요한 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내부적인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

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 ②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 절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기술 등의 인증

제14조(기술개발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 ③ 주관연구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한국기술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기

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  
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사업 등 결과물의 소유자는 그 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2. 제48조에 따른 한국기술진흥원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7조(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

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신제품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

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표시) ① 제18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 제품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

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24조(기술기반조성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술기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제25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

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 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디자인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기술에 관한 정보
2. 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의 표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2. 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3. 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기술저변의 확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3. 기술의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과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과 디자인, 인

문·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 4 절 국제기술협력

제35조(국제기술협력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제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사업”은 “국제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제36조(남북한 기술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한 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기술 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 5 절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촉진

제40조(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중견·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중견기업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5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분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제46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

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① 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재원

가. 제15조에 따른 기술료

나. 정부의 출연금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라. 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2. 기금의 용도

가.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나. 기술의 사업화 지원

다. 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라. 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

사.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출연

자. 기술혁신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차. 일반회계에의 전출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영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절 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8조(한국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3. 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5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공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51조(한국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 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5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3조(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 4 장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 1 절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54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 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술진흥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제56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제57조에 따른 전담조직
  4. 제58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제88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9조(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에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60조(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2 절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

제63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2. 기술이전·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88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

의 연계체제 구축

5. 제6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7. 기술이전·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5.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기술보호·육성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육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73조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①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0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술등의 기부채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및 기술교육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 등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 등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 등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 등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73조(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72조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제74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등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5조(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제76조(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 등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 등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88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79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 학교인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 절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81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용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2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填)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88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양여 및 사용·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 4 절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87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8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5 절 기술신탁관리업

- 제89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피성년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9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

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신탁사무의 방법)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91조(신탁사무의 위탁)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제92조(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3조(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4조(허가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8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89조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9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3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93조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95조(과징금처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9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5 장 기술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 제 1 절 기술교육의 진흥

- 제96조(단기 기술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기술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단기 기술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기술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기술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기술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술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기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기술교육기관간 또는 기술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술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교육기관이 제9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보고·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교육기관의 장에게 제9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기술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1조(기술자문 등) ① 기술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기술교육기관의 장이나 기술교원에게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자문을 요청 받은 기술교육기관의 장과 기술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기술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기술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술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① 기술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교육기관에 기술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기술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04조(기술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기술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5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기술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기술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절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6조(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기술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기술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기술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기술교육센터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기술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기술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기술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기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기술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 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0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 등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1. 기술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
  2. 기술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9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기술교육기관이 기술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0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기술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기술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2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 절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13조(산학연협력계약) ① 기술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기술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填)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에게 귀속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학교기업) ① 기술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기술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기술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기술교육기관 회계(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7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9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9조(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교육기관은 다른 기술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0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제121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기술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학자금 용자계약의 지원) 기술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6 장 보칙 및 벌칙

제1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1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기술진흥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5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기술진흥원, 세라믹기술원,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26조(비밀유지) 제12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혁신, 기술이전·사업화촉진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벌칙) 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1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

- 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 제12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②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 및 제1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 조(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법령에 대한 적용)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법률이나 그 법률의 조항을 인용한 법령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1. 논문 및 서적

김용정, 기초연구성과의 확산·활용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성과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권욱현외 6인, 연구개발 단계별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기초연구에서 개발까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0.

김미정·이홍권, 기초연구의 정책운영체계 개선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보고서(2009)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200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초과학기술위원회,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방안 (2008. 7. 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전 원천 연구개념 및 비중 산정(2009. 7. 28)

도계훈외,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원천연구 비중 산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양승우 외,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신용대·김경유, “유럽연합의 과학기술정책 현황과 시사점”, 「EU연구」

제6권, 한국의국어대학교 EU연구소(2000)

교육과학기술부, 200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8.

정미애 외4인,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산학연협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Europe 2020: The New Lisbon Strategy, Sociaal-Economische Raad, 2009.

## 2. 웹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main.html>)

백악관 미국경쟁력강화법 자료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1/01/06/america-competes-act-keeps-americas-leadership-target>

미국 경제개발청 지역혁신전략프로그램  
<https://www.eda.gov/oie/ris/>

미국 국립과학재단 <https://www.nsf.gov/>

미국 국립과학기술의회 <https://www.whitehouse.gov/ostp/nstc>

미국 항공우주국 <https://www.nasa.gov/>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http://www.noaa.gov/>

미국 국립 표준기술연구소 <https://www.nist.gov/>

미국 산업부 내 혁신과 창업가정신국 <https://eda.gov/oie/>

유럽의회 리스본전략

[http://cordis.europa.eu/programme/rcn/843\\_en.html](http://cordis.europa.eu/programme/rcn/843_en.html)

유럽연합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7

[https://ec.europa.eu/research/fp7/index\\_en.cfm](https://ec.europa.eu/research/fp7/index_en.cfm)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일본학술진흥회 <https://www.jsps.go.jp/>

과학기술진흥기구 <http://www.jst.go.jp/>

### 3. 법률안

배덕광의원 대표발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의안번호 4514, 발의연월일 2016.12.21.)